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2022. 6.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 Contents | 목차

I	장마철이란?	04
II	장마철 재해 발생 현황	09
III	장마철 안전보건관리(위험요인별)	12
IV	장마철 주요 사고 사례	31
V	장마철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59
VI	기타 안내사항	74



Part. I

장마철이란?





장마철이란?

- 일반적인 의미로 장마란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하며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의 여름에 걸쳐 동아시아에서 습한 공기가 전선을 형성하여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그 시기를 “장마철”이라고 함

장마철이 왜 위험한가요?

- 장마철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지반 내부로 강우의 침투가 발생할 경우 지반의 전단강도(τ)가 감소하여 연약화 되므로 기초, 사면, 흙막이 등의 지반과 관련된 구조물 붕괴우려가 높음
- 잦은 강우와 높은 습기로 인하여 인체의 저항(Ω)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감전사고의 위험 높음
- 고온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
- 하절기 탱크, 맨홀, PIT 내부 빗물,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 등이 체류하여 미생물의 증식 및 부패로 인한 산소결핍 등 질식의 우려가 높음

장마철 재해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나?

- 절·성토면내 지표면을 통한 우수의 지속적 유입에 따른 비탈면 붕괴
- 굴착면 지하수 유출에 따른 토사유실로 인한 흙막이보호공 붕괴
- 복개구조물 및 지하구조물 공사 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 전기기계·기구 등 사용 시 충전부 접촉 및 누전에 의한 감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중독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 옥외작업자 고열에 의한 열사병 등 건강장해



이것만은 꼭!!!

- ✓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확인
- ✓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 축대나 옹벽 균열부의 우수 유출에 따른 배면 토사유실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여부 확인
- ✓ 주위의 배수로·배수공 등이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
- ✓ 우기시 감전에 대비한 배전반, 분전반, 이동전선 등의 적정 설치여부
- ✓ 낙뢰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 여부 및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외부 비계 등의 안전장치 확인
- ✓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
- ✓ 작업 시작 전 기상청 “날씨알리미 APP”을 확인하여 근로자 작업장소에 대한 기온·기상 예보를 확인



01 장마철 기상예보 요약(2022년 6~8월) ※ 출처: 기상청(날씨>장기전망>3개월 전망)

- ✓ (기온 전망) 6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7~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임
- ✓ (강수량 전망) 6월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7~8월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주기적으로 발생
- ✓ (엘니뇨·라니냐 전망) 세계 각국의 엘니뇨·라니냐 전망에 따르면 라니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엘니뇨란 적도부근에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 라니냐는 동태평양의 적도지역에서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일어나 생기는 이상 현상

02 여름철 기후 전망(2022년 6~8월)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때가 있겠습니다. <p>(월평균기온) 평년(21.1~21.7°C)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입니다.</p> <p>(월강수량) 평년(101.6~174.0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입니다.</p>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날이 주기적으로 있겠으나, 점차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덥고 습하겠습니다. <p>(월평균기온) 평년(24.0~25.2°C)보다 높을 확률이 각각 50%입니다.</p> <p>(월강수량) 평년(245.9~308.2mm)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입니다.</p>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덥고 습하겠으며,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때가 있겠습니다. <p>(월평균기온) 평년(24.6~25.6°C)보다 높을 확률이 각각 50%입니다.</p> <p>(월강수량) 평년(225.3~346.7mm)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50%입니다.</p>



03 사용자 위치기반 날씨알리미 앱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위험기상,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 스마트폰으로 직접 알려주는 위치기반 알림서비스 실시
 - (강한 비 사전알림) 내 위치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 시
 - (중요알림) 중요 기상특보(호우, 태풍 등), 지진, 긴급예보변경 발표 시
 - (선택알림) 그 외 기상특보(풍랑, 건조 등), 육상·바다예보 수신설정 시



〈 지진 및 위험기상 발생 시 강제알림 〉

〈 강한 강수 예상시 사전알림 〉

-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필요한 날씨정보(육상·바다예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설정 지원

* 관심지역 선택(최대 10개), 스케줄(원하는 요일, 시간) 설정 등

- 전국 날씨와 내 위치 날씨를 종합적으로 파악 가능하게 확대, 축소, 이동이 가능한 고해상도 날씨지도 연계 구현, 관측, 동네예보, 특보, 레이더·위성영상 등을 중첩하여 제공



〈 앱실행 → 현재날씨, 전국날씨 등, 날씨지도 〉

〈 위험기상알림 → 기상특보 〉



▶ 날씨알리미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 앱 스토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날씨알리미” 를 검색하세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날씨알리미 정보로
내 주변의 위험기상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시고
나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Part. II

장마철
재해 발생 현황





01 '21년 업무상 사고 재해 현황

- 2021년 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 사고사망자 9.0%(41명) 감소

(단위 : 명)

구분	'21. 12.	'20. 12.	증 감	증 감 율
업무상 사고사망자	417	458	△41	-9.0%

02 '21년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현황

- '21년 건설업의 발생형태별 사고부상자는 떨어짐 > 넘어짐 > 맞음 > 절단·베임·찔림 순이며, 사고 사망자 중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가 59.5%(248명)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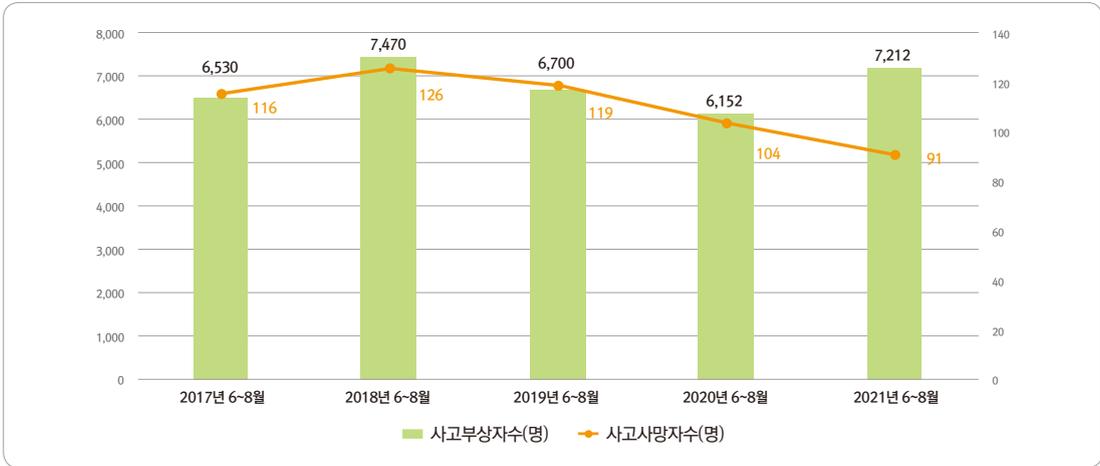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떨어짐	넘어짐	맞음	절단·베임·찔림	부딪힘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	기타
'21. 12.	사고사망자	417	248	5	30	2	37	14	26	25	30
'20. 12.	사고사망자	458	236	3	42	1	38	14	33	24	67
증 감	사고사망자	-41	12	2	-12	1	-1	0	-7	1	-37
증감율	사고사망자	-9.0%	5.1%	66.7%	-28.6%	100.0%	-2.6%	0.0%	-21.2%	4.2%	-55.2%



03 장마철 재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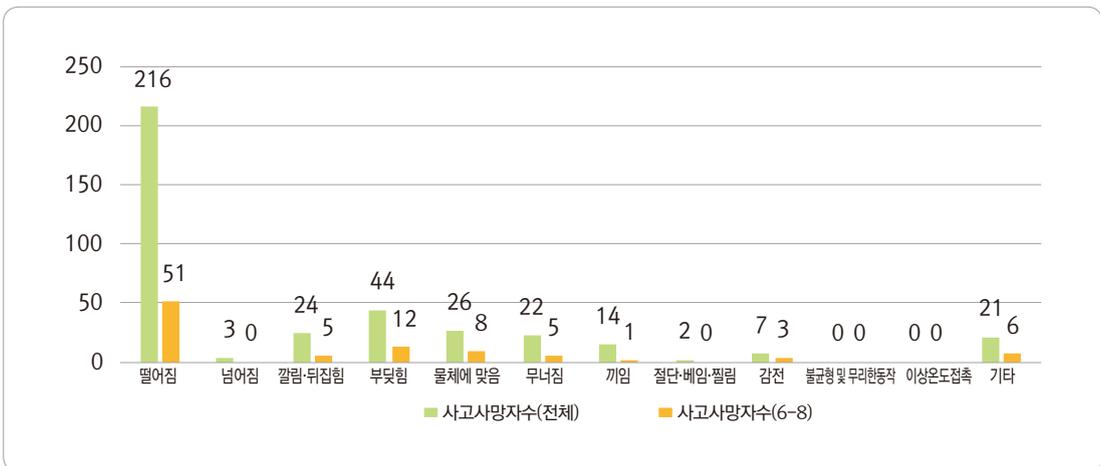
-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장마철(6~8월)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와 사고부상자는 감소 추세 - 사고사망자는 '18년도에 증가한 이후 '21년까지 감소추세임



04 발생형태별 재해 현황

- 2021년 발생형태별 사고사망자는 떨어짐 > 부딪힘 > 맞음 > 깔림·뒤집힘 순임 - '21년 장마철(6~8월)도 비슷한 동향을 보이고 있음

※ 승인일이 아닌 재해월을 기준으로 산정





Part. III

장마철 안전보건관리
(위험요인별)





01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조치

☑ 위험요인

- ▶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또는 무너짐(붕괴)
- ▶ 주변지반 약화로 인한 인접건물, 시설물의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의 파손
- ▶ 현장의 침수로 인한 공사중단 및 물적 손실
- ▶ 강 등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공사구간에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 유입
- ▶ 복개구조물 개·보수 및 지하구조물 시공 중 집중호우로 인한 우수 유입으로 현장 침수

※ 집중호우(集中豪雨, severe rain storm) :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한 시간에 30mm이상이나 하루에 80mm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는 연강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리는 정도를 말함.

☑ 안전대책(공통)

- ▶ 수변지역, 지대가 낮은 지역 등에 위치한 현장은 호우 시 상황 수시 파악
- ▶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철골작업 중지
- ▶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비치
- ▶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대기반을 편성하여 운영
- ▶ 지하매설물 현황파악 및 관련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 ▶ 현장주변 우기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 ▶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확보
- ▶ 침수된 작업장 복구 후 재투입 시 전기기기 점검 후 작업재개(감전예방)

☑ 침수된 공사현장

- ▶ 침수가 예상될 때는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옮길 수 있는 것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둔다.
- ▶ 침수 이후에는 감전 요소가 있는지 살핀 뒤 접근하도록 한다.
- ▶ 복구시에는 안전 여부를 먼저 살핀 뒤 복구를 시작한다.
- ▶ 위험이 있을 시에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 ▶ 전기기기 점검·정비시에는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한다.
- ▶ 절연장갑, 절연장화 등 개인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 손이나 발이 젖었으면 잘 말린 후 전기기기를 사용한다.





☑ 안전대책(통신 및 전력구 터널관련)

- ▶ 터널 굴진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 ▶ 추진 및 도달기지로 하천수 또는 우수 유입방지 안정성 확보 검토
- ▶ 집중호우시 작업중지 후 대피 등의 기준강수량 및 강우강도 마련여부 검토
- ▶ 상류유역의 호우에 대한 작업중지 및 대피계획 수립여부
- ▶ 인접 하천의 수위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및 경보계획 수립여부

☑ 안전대책(상·하수관로 등 수처리 시설관련)

- ▶ 작업구역내 관망의 현황 및 유역면적 산정에 따른 작업중지 또는 대피기준 마련 여부
- ▶ 유역면적내 호우 발생에 따른 모니터링 및 경보 계획 수립여부
- ▶ 작업지점별 비상시 대피계획의 적정성 확보여부
- ▶ 기존 시설내(상·하수관로 등) 유지·보수 작업시 우수전환 여부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개요

·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중 집중호우로 빠르게 늘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려 3명 사망

대책

· 집중호우 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또는 대피기준 마련 및 준수



02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위험요인

-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 주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개구부덮개 미설치로 추락
-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 안전대책(공통)

- ▶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시 사전 점검실시
 - 작업발판이나 개구부 덮개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상태 점검
 - 철골작업 시 근로자 이동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 설치 여부 점검
 - 안전대 부착설비의 이상 유무(처짐, 풀림, 고정 등) 사전점검
 -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위험 장소에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었는지 점검
-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사전 점검실시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 점검



03 토사 무너짐(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위험요인

- ▶ 우수가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경사면의 유동성 증가 및 전단강도 저하로 인한 경사면 무너짐(붕괴) 위험
- ▶ 흙막이 지보공의 붕괴 위험
 - 빗물침투에 의한 흙의 전단강도 저하
 - 함수량 증가에 따른 배면(뒷면) 토압의 증가
- ▶ 배수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의 붕괴

☑ 안전대책

- ▶ 굴착 경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사전 안전조치
- ▶ 경사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운행 금지 또는 자재 등의 쌓기 금지
- ▶ 경사면의 무너짐 또는 토석의 떨어짐에 의하여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지보공의 설치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등 조치 실시
- ▶ 현장주변 옹벽, 석축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설관리주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 ▶ 흙막이지보공 상태를 점검하고 계측관리(지중 경사계, 지하 수위계, 변형률계 등) 및 이상변위 시 작업중지 등 조치 후 보강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개요

· 굴착기를 이용하여 야적된 토사를 절취, 제거하는 과정에서 하부에 묻혀 있는 배관의 누수 부분을 찾던 중 주변의 성토(법면)지반이 무너지면서 토사에 매몰

대책

- 지반 굴착면 기울기 준수
- 굴착전 사전 지반조사 철저
- 빗물 등 침투방지조치



04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위험요인

- ▶ 장마철 전기 기계·기구 취급도중 감전재해
- ▶ 전기시설 침수로 인한 감전재해 위험
- ▶ 전기 충전부에 근로자 신체접촉으로 인한 감전

☑ '21년 건설현장 장마철(6~8월) 감전재해현황(공식통계 기준)

- ▶ '21년 건설업 감전 사고사망자의 42.9%(3명/7명)가 장마철(6~8월)에 발생

☑ 안전대책

- ▶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 연결 사용 및 외함 접지
- ▶ 임시 수전설비 설치장소는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 ▶ 임시 분전반은 비에 맞지 않는 장소에 설치
- ▶ 전기기계·기구는 젖은 손으로 취급 금지
- ▶ 이동형 전기·기계 기구는 사용전 절연상태 점검
- ▶ 배선 및 이동전선 등 가설배선 상태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 활선 근접 작업시에는 가공전선 접촉예방조치 및 작업자 주위의 충전 전로 절연용 방호구 설치
- ▶ 낙뢰 발생시 금속물체 및 자재 취급을 지양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개요	· 이동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습기가 있는 바닥에 노출되어 감전 사망
대책	· 전기 기계·기구 배선의 절연 조치 철저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실시 · 통로바닥 및 습윤한 장소에 배선 금지



05

강풍에 따른 양중기 및 건설기계 등의 무너짐·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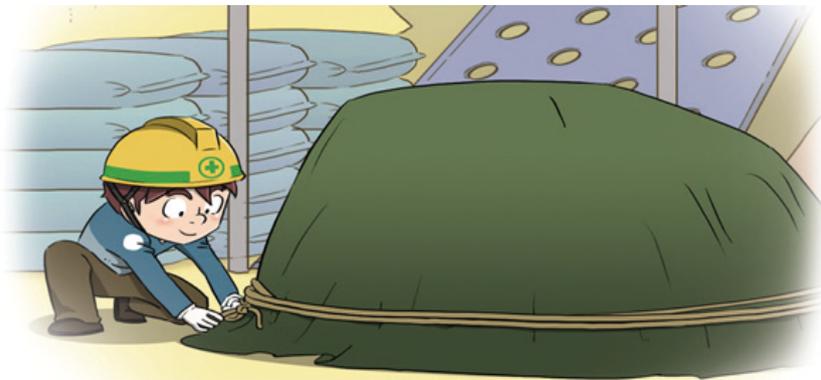
- ▶ 태풍 등 강풍에 따른 타워크레인 무너짐(붕괴)·넘어짐 위험
- ▶ 강풍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 및 항타기·항발기 등의 넘어짐 위험
- ▶ 강풍에 의해 날리는 자재·공구 등에 맞음

☑ 강풍관련 기상특보 발효기준

- ▶ 강풍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 ▶ 강풍경보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 안전대책

- ▶ 강풍 시 작업 제한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 및 철골작업 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 순간풍속 30m/s 초과하는 바람 통과 후에는 작업 개시전 각 부위 이상유무 점검
 - 순간풍속 35m/s 초과 시 건설작업용 리프트 지지대 수 증가
- ▶ 강풍에 대비하여 각종 가설물, 안전표지판, 적재물 등의 결속 및 보강상태 점검 실시
- ▶ 옥상 가설재 및 재료 등을 견고하게 결속하거나, 낙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동
- ▶ 비계 등에 과도한 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트에 통풍구를 설치
- ▶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망의 설치 여부 확인
- ▶ 강풍예보가 있는 경우에는無理하게 작업하지 않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 또는 작업 연기





06 밀폐공간 작업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위험요인

- ▶ 하절기 탱크, 맨홀, 피트(pit)의 내부에 빗물, 하천의 우수 또는 용수 등이 체류하여 미생물의 증식 또는 유기물의 부패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질식
- ▶ 밀폐공간에서 유기용제를 함유한 방수, 도장 등의 작업시 유기증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

☑ 밀폐공간

- ▶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①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애 또는 ②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소결핍 :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 유해가스 :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 밀폐공간이 반드시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면서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한다.





☑ 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밀폐공간 항목		보유현황 (개소)	작업 근로자수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 (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어유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 밀폐공간 작업 시 조치 기준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측정은 반드시 공기측정 장비의 조작과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가 수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에서 산소농도측정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측정기관이 측정하도록 규정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인지 여부를 평가

☑ 적정공기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그 밖에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하한치(Lower flammable limit, LFL)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와 독성가스의 농도가 허용기준 미만인 경우까지도 적정공기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시기

- 밀폐공간작업을 위한 사전조사 시
- 밀폐공간작업을 시작하기 전
- 장시간 작업,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시 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ex. 2시간)
- 밀폐공간작업 중 전체 근로자가 작업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작업을 재개하기 전
-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 환기

- 환기는 밀폐공간내 공기상태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밀폐공간작업에서 중요한 안전작업 수단입니다.
-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가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작업 중에 산소가 소모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질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이 때문에 밀폐공간 내에서 이루어질 작업의 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기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밀폐공간작업전 확인시 적절한 환기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환기를 하여야 합니다.

✓ 환기시 주의사항

- 환기장치는 밀폐공간 작업 전 테스트를 해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교체할 때까지 작업금지)
- 작업 전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기 위해 충분히 환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밀폐공간 체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급기)
- 작업 중에는 가능한 계속 환기하십시오.(유해가스 발생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유해가스 발생원과 반대방향에 설치)
- 급기부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십시오.(배기부와 떨어져서 설치)
-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를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해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하십시오.
- 환기만으로 적정공기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반드시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 보호구 착용

-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보호장구에는
 - ① 호흡기 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②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보호가드, 구명 밧줄 등
 - ③ 구조용 삼각대, 무전기, 경보기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보호장구는 작업이나 긴급상황에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용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호흡용보호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호흡용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함.

✔ 호흡용보호구의 착용 장소

- 유해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환기만으로 적정공기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 탱크, 화학설비, 수도나 도수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가 힘든 경우
-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공기호흡기(SCBA)

- 밀폐공간은 장소가 협소하여 공기호흡기를 차고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송기마스크의 송기라인이 꼬이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하며, 정전 등으로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없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 ⚠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에서 공기정화식 호흡보호구(방독마스크 등)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기호흡기(SCBA)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토록 하십시오.



▶ 작업 관리

■ 관리감독자의 직무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



✔ 관리감독자의 직무

-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
-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지 여부를 작업시작 전에 확인
- 측정장비, 환기장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
-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

☞ 관리감독자의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할 때 사업주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감시인의 배치

-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상시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감시인은 밀폐공간 내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인원의 점검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입장 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 출입의 금지

-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밀폐공간에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 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 연락체제 구축

- 밀폐공간 내부 작업자와 외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전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매 작업 시작 전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장 주지사항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에 관한 사항
-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07 하절기 건강장해 예방조치

☑ 위험요인 및 준수 사항

▶ 폭염특보 발령 기준

- ✓ 폭염주의보 :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폭 열 경 보 :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여름철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중 무더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
- ▶ 한 여름철에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3시 사이에는 가능한 외부작업 지양
- ▶ 고온의 허용온도 Level(미국 ACGIH)

작업의 강도	작업내용	허용온도레벨
지극히 경작업	손끝을 움직이는 정도(사무)	32℃
경작업	가벼운 손작업(선반, 감시보턴조작, 보행)	30℃
중등도작업	상체를 움직이는 정도(줄질, 자전거 주행)	29℃
중등도작업	전신을 움직인다(30~40분에 한번 휴식한다)	27℃
중작업	전신을 움직인다(즉시 땀이 난다)	26℃

※ ACGIH : America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 ▶ 작업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을 마시는 등 충분한 물을 섭취
 - ※ 알코올, 카페인 포함되어 있는 음료 등은 피할 것
- ▶ 현장내 식당이나 숙소주변의 방역, 현장식당의 조리기구 등에 대한 청결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는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시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개요** · 혹서기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건강장애 발생
- 대책** · 하절기 무리한 옥외작업 지양
· 휴식시간과 작업시간의 합리적인 배열
· 적당량의 수분 및 염분 섭취

☑ 건강장애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

열경련
(熱經攣, Heat Cramp)



- 원인** ·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할 경우에 자주 발생
· 지나친 땀 배출에 의한 탈수와 염분소실이 원인
- 증상** · 작업시 많이 사용한 근육에 통증과 함께 경련이 오는 것이 특징
· 이에 앞서 현기증, 이명(耳鳴), 두통,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남
- 치료** ·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환자를 눕히고 작업복을 벗겨 체온을 낮추며, 더 땀 배출 방지조치
· 동시에 생리 식염수 1~2ℓ를 정맥주사 하거나 0.1%의 식염수를 마시게 하여 수분과 염분을 보충

열사병
(熱射病, Heat Stroke)



- 원인** · 고온 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격심한 육체적 노동을 할 경우 또는 옥외에서 태양의 복사열을 두부에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 발생
- 증상** · 땀 배출(발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체열방출이 장애됨으로써 체내에 열이 축적되어 뇌막혈관은 충혈되고 두부에는 뇌의 온도가 상승하여 체온조절 중추의 기능, 특히 발한기전이 장애를 받음
· 또한 체온이 41~43℃까지 급격하게 상승되어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며 피부가 건조하게 됨
· 치료를 안하면 100% 사망하며,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체온43℃ 이상인 때에는 약 80%, 43℃이하인 때에는 약 40%의 높은 사망률을 보임
- 치료** · 체온의 하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얼음물에 몸을 담가서 체온을 39℃ 이하로 빨리 내려야 함
·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찬물로 몸을 닦으면서 선풍기를 사용하여 증발 냉각이라도 시도하여야 함



열피로
(熱疲勞, Heat Exhaustion)



원인

- 고온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된 결과이며, 중노동에 종사하는 자, 특히 미숙련공에게 많이 발생함
- 기온과 습도가 갑자기 높아질 때 발생함

증상

- 경증인 경우에는 고온환경에서 일할 때 머리가 아프다거나 한 두 차례 어지럽다는 것을 느낌
- 실신환자는 무력감, 불안 및 초조감, 구역 등의 증상이 앞서 나타남
- 의식을 잃고 쓰러질 경우 의식은 2~3분 이내에 회복하지만, 고온 환경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혈압, 맥박수, 자각증상 등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1~2시간이 걸림

치료

- 환자를 눕히거나 머리를 낮게 눕히면 곧 회복이 되므로 특별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음
- 환자를 시원한 곳에 옮겨 안심시키고 1~2시간 쉬게 하면서 물을 마시도록 함

열성발진
(熱性發疹, Heat Rash)



원인

- 피부가 땀에 오래 젖어서 생기는 것으로 고온, 다습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 작업할 때 많이 발생

증상

- 처음에는 피부에 조그만 붉은 홍반성 구진이 무수하게 나타나며, 대개의 경우 맑거나 우유빛의 액체가 찬 수포로 변함
- 발진은 가렵지는 않으나 따갑고 얼얼한 느낌이 있음. 이러한 통증은 발진부위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발진이 생기기 전에 앞서 나타남

치료

- 고온환경을 떠나 땀을 흘리지 않으면 곧 치유되며, 가급적 시원한 환경에서 땀을 적게 흘리고 2차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네오 마이신을 함유한 로션을 사용
- 냉수 목욕을 한 다음, 피부를 잘 건조시키고 칼라민로션이나 아연화연고를 바름



☑ 고열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1차 생리적 영향

- 피부혈관의 확장
- 땀 배출(발한)
- 근육이완
- 호흡증가
- 체표면적 증가

✔ 2차 생리적 영향

- 심혈관장해
- 수분과 염분부족으로 대사 장애
- 신장장해(소변량 감소)
- 위장장해
- 신경계장해



- ▶ 무더운 하절기에 건설현장, 조선, 항만 등 옥외작업장에서는 고온 환경에 노출 및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하여 고열장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 인체는 외부환경변화에 대하여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어 고열환경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계속할 경우 혈류량이 증가하고 땀을 흘림으로 열의 발산을 촉진시키는 체온조절이 일어나게 함
- ▶ 피부의 온도보다 주위기온이 더 높으면 땀 증발로 배출되는 열보다 열복사·기류 등으로 인체에 흡수되는 열이 많아 열 발산이 효과적으로 안 되어 체온조절기능의 변조 및 장해를 초래하게 되고 열중증 등 고열 장해를 초래함. 고열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기온, 기류, 기습, 복사열이 있음

☑ 고온의 노출기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2020-48) 별표3

(단위 : °C, WBGT)

작업휴식시간비	작업강도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계속 작업		30.0	26.7	25.0
매시간 75%작업, 25%휴식		30.6	28.0	25.9
매시간 50%작업, 50%휴식		31.4	29.4	27.9
매시간 25%작업, 75%휴식		32.2	31.1	30.1

- ※ 경 작업 : 앉거나 서서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200kcal이하)
- ※ 중등작업 :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등 (시간당 200~350kcal)
- ※ 중 작업 : 곡괭이질 또는 삽질 등(시간당 350~500kcal)
- ※ WBGT(습구-흑구온도지수) : 인체의 열 흡수와 배출에 영향을 크게 주는 온도, 복사열, 기온의 3가지를 넣은 지표로서 옥외 및 옥내로 구분하여 계산식을 달리하며 °C로 표시



☑️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행동수칙】

① 물(안전보건규칙 제571조 적용)

- 근로자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배치

② 그늘(안전보건규칙 제79조 적용)

-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 구조물 또는 그늘막에 의한 그늘이 제공되도록 조치
 - * 별도의 휴게장소를 지정토록 하고, 휴게장소에는 의자나 돛자리 등 필요한 물품을 구비토록 조치

③ 휴식(안전보건규칙 제567조 적용)

- 폭염특보 발령시 그늘에서 물을 섭취하면서 자주 쉴 수 있도록 조치
 - *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자주 쉴 수 있도록 조치

【폭염주의보 발령시】

- ① 6월~9월에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야외행사 및 옥외활동금지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 유지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착용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함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 방지
 -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관리 및 소독 실시
 -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 섭취 (알코올, 카페인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 설치

【폭염경보 발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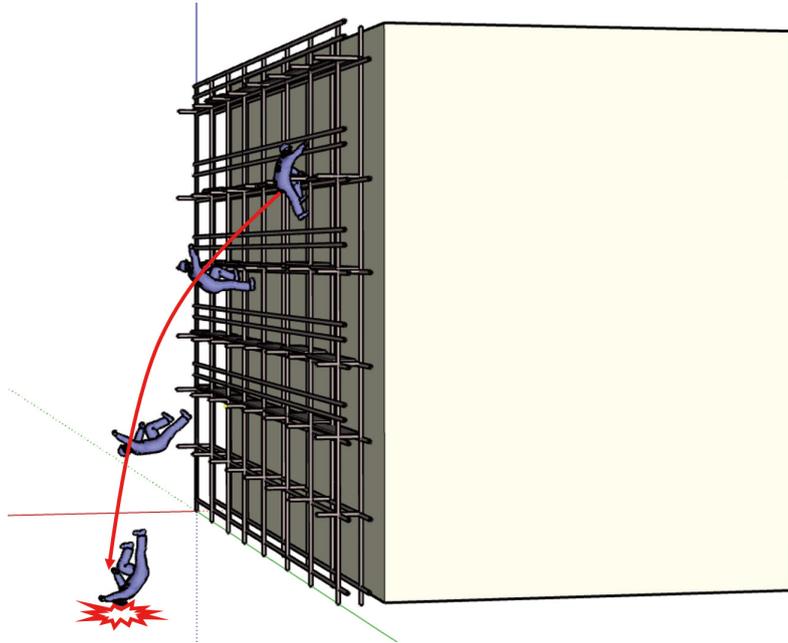
- ① 6월~9월에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 될 때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 금지요망
 - 기온이 높은 시간대의 작업을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검토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
 - 12시~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함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주의력, 집중력이 감퇴되어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 삼가
 -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각별히 신경 쓸 것



01 외부비계 밖으로 안전난간을 밟고 내려오던 중 추락(사망1)

공사명	○○○ 신축공사	발생일시	2021. 08. 06.(금) 08:20경
재해형태	추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제주 제주시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2층 1개동
재해개요	2021. 08. 06.(금) 08:20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소재 ○○○ 신축공사(개인직영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구조물 후면 외부비계에서 벽체 최상부 노출 콘크리트 마감면 발수제 도포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외부 비계 밖으로 나와 외부 비계의 안전난간대를 밟고 아래로 내려오다(추정) 발을 헛디뎠어 약 7.8m 아래바닥(모래)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 상황도



안전대책

- 수직 승·하강용 이동통로 설치
 -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수평이동 및 수직 승·하강용)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된 통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개인보호구(안전대)지급 및 착용
 - 사업주는 높이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비계 내측으로 추락 등)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 및 부착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 관련사진



[사진1] 재해발생 현장전경



[사진2] 재해자와 사용한 발수제(좌) 및 스프레이건 위치(우)



2020-기술총괄본부-188

안전은 권리입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 목적** 추락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재해예방수칙과 자율점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 후 불시감독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 대상** 「추락위험 공사가 진행 중인, 고위험현장

*** 시기(집중단속)** 2020년 4월 ~ 연중

*** 주요 확인사항**

추락사고를 예방합시다!

- 핵심 포인트**
- 1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망, 개구부 덮개 설치하기
 - 2 안전모, 안전대 반드시 착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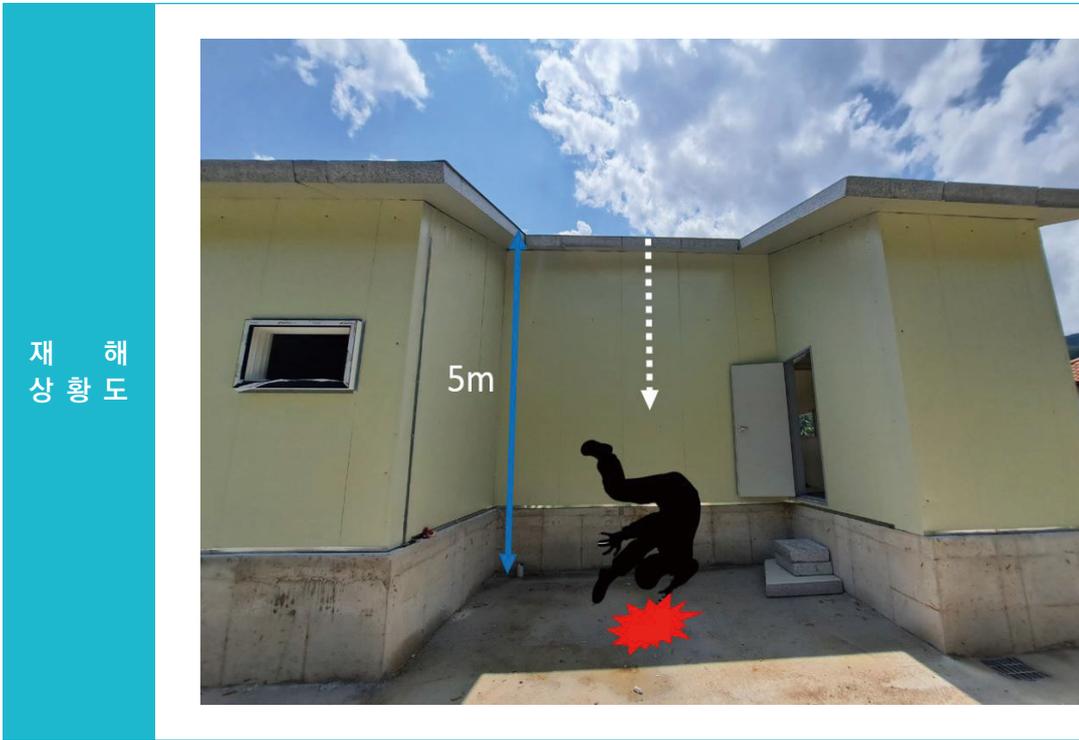
(체크리스트 ☑)

번호	내용	확인
1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2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3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4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주요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였는가!	
5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하였는가!	
6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위험 장소에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7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는가!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였는가!	



02 지붕방수 작업 중 떨어짐 (사망1)

공사명	○○주택 신축공사	발생일시	2021. 08. 19.(목) 14:20경
재해형태	추락	재해정도	사망1명
소재지	경북 성주군	공사규모	지상1층 1개동
재해개요	2021. 08. 19.(목) 14시20분경 경북 성주군 소재 「○○○○○」현장에서 ○○○○ 소속 피재자가 샌드위치 패널 지붕 위로 올라가 방수시트를 부착하던 중샌드위치 패널 지붕에서 미끄러지면서 5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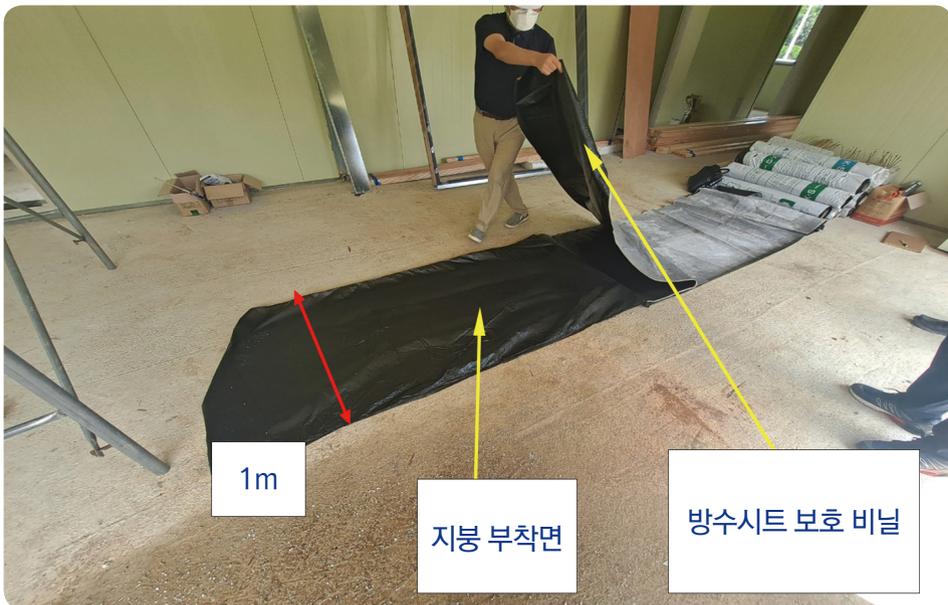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추락위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안전 하게 걸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	--

▶ 관련사진



[사진1] 재해발생 현장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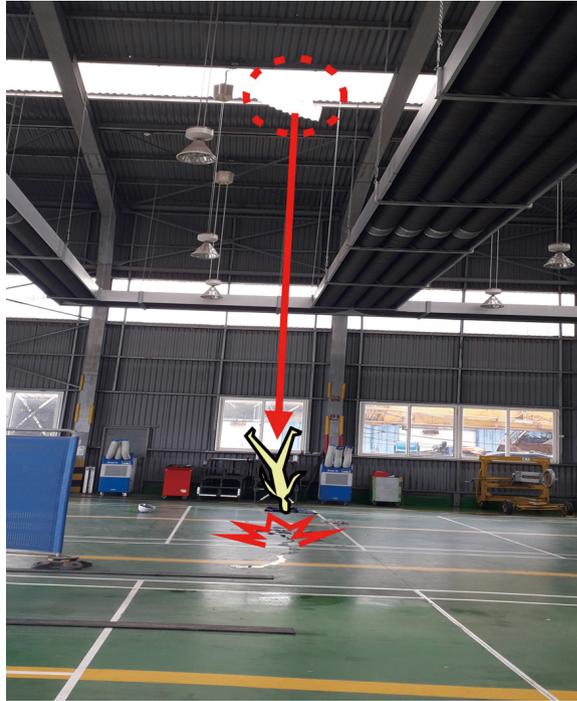
[사진2] 지붕방수에 사용된 방수시트 모습



03 지붕보수공사 중 선라이트 탈락으로 추락(사망1)

공사명	노후 ○○○ 등 보수공사	발생일시	2021. 8. 12.(목) 08:30경
재해형태	추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경기 남양주시	공사규모	지상1층(철골 및 판넬마감)
재해개요	2021년 8월 12일(목) 08:30경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노후 ○○○ 등 보수공사에서, 지붕 교체작업을 위한 준비작업 과정에 재해자(60세, 직영)가 지붕 위에서 이동 중 노후된 채광창 일부 탈락과 함께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재
상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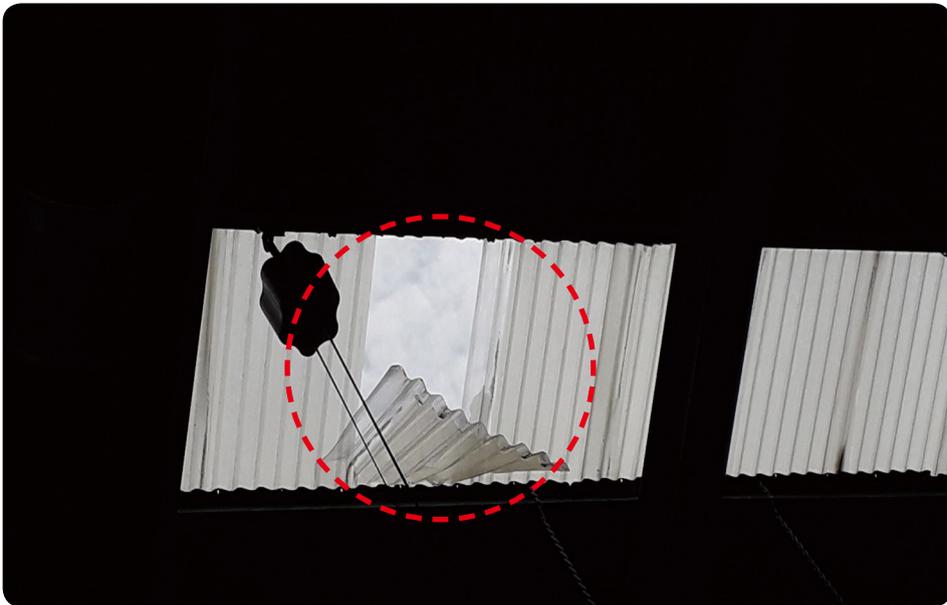
- 안전대책**
- 추락 방호조치 실시
 - 사업주는 지붕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함.
 - 보호구 착용 관리 철저
 -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착용하고 작업 하도록 관리 철저.



▶ 관련사진



[사진1] 재해발생 현장전경



[사진2] 재해자가 떨어진 선라이트 탈락 모습



신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사고사망 예방

지붕 공사 추락위험 안전 점검 수칙

☞ 재해 사례



신축 공사

☞ 재해개요

'19.12.18. 경기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리콘 작업을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다 미끄러지면서 3.0m 아래 발코니로 떨어짐



유지 보수

☞ 재해개요

'19.11.22. 전라북도 지붕판넬교체공사 현장에서 지붕 선라이트 보수 공사 중 선라이트가 파손되며 7.7m 아래로 떨어짐



태양광 설치

☞ 재해개요

'19.12.20. 충청북도 축사태양광 설치현장에서 축사지붕 설치 중 합판을 옮기다가 선라이트가 파손되어 3.0m 아래로 떨어짐



석면 해체

☞ 재해개요

'19.1.24. 강원도 건물철거 현장에서 지붕 석면 제거 작업 중 지지목 각재가 노후되어 부러지며 2.2m 아래로 떨어짐

예방대책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추락 방호망 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실시



경사지붕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을 설치

2020-교육홍보본부-242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안전대를 걸었습니까?
생명을 걸었습니까?



신체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 핵심예방조치 (Key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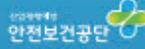


- 1 안전대 부착설비, 가설통로 및 추락방지망 설치
- 2 지붕의 형태, 구조를 파악하고 목재 등의 부식여부 확인
- 3 가설통로 설치, 작업 계획서 작성 및 교육으로 안전한 이동경로 준수

📄 지붕공사 안전점검표

점검일자 : . . .

번호	작업명	점검내용	점검자		점검결과	조치사항
			구분			
			작업 전	작업 중		
1	슬레이트, 선라이트 지붕의 노후상태는 확인하였는가?					
2	지붕 위 작업을 위한 기상상태는 적정한가?					
3	지붕 위 작업 시 가공전선에 접촉위험은 없는가?					
4	개인보호구는 근로자 모두 지급·착용하고 있는가?					
5	작업발판은 설치되어 있는가? (폭30cm이상)					
6	추락방지용 안전방망은 설치되어 있는가?					
7	안전대 부착설비는 설치되어 있는가?					
8	이동식사다리는 적정하게 설치되었는가?					



안전대를 걸었습니까?
생명을 걸었습니까?



04 전등 점검 및 수리 작업 중 감전(사망1)

공사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발생일시	2021. 06. 15.(화) 10:10경
재해형태	감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인천 서구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8층 1개동
재해개요	2021. 6. 15.(화) 10:10경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지하3층에서 전기공사업체 소속인 재해자가 사다리 위에서 전등점검 및 수리 작업 중 절연피복이 벗겨진 전선 도체에 신체(목)가 접촉되어 감전된 후 바닥면으로 떨어져(h≈1.4~1.7m)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임.		



- 안전대책

 - 전로 차단 후 전기 작업 실시
 -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고, 전로 차단 시에는 절차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함.
 - 전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VA를 넘는 전기 작업을 할 경우 전기 작업의 목적 및 내용, 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인원,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보호구 및 방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조도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 관련사진



[사진1] 재해발생 현장전경



[사진2] 재해자가 수리 작업중이던 전등 및 설치된 가설분전반 모습



일터에서의 유해·위험 예방 조치 전기기계, 기구 적정 설치/누전차단기 등에 의한 감전방지

조심조심
코리아

작업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2015 - 교육미디어 - 674

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전기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 상기 조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조항이 있음을 유념한다.



☑ 일터에서 적용하여야 할 유해·위험 예방 조치

☑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
 - 전기 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 습기·분진 등 사용 장소의 주위 환경
 -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 습기, 분진 등 화재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예



습기에 의한 과도한 부식



분진과다 집적

-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

☑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다음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
 -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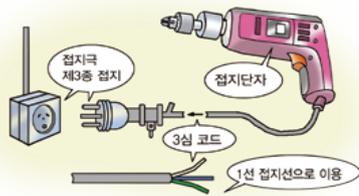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Safety Point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 (750V이하 직류전압이나 600V 이하의 교류전압)용 전기기계·기구
-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
-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또는 교환
-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mA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음
 -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음
 -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
 -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



Check Box |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기구
- ▶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 ▶ 비접지방식의 전로



신체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숙련 노동자의 안전한 현대형 전동공구 사용

숙련(Skilled, 노련한, 능숙한) 노동자의 특징

- ① 50세 이상의 근로자로 다양한 인생 경험을 갖고 있다.
- ② 자신이 주로 해왔던 작업, 업무 등에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는다.
- ③ 산업안전에 대하여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있다.
- ④ 위험한 작업에 경험이 많을수록 위험한 작업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
- ⑤ 배우는 것 보다는 가르치는 것에 익숙하다.

핵심 실천 사항



누전차단기, 접지



전동방지장갑 착용



방호덮개 설치

-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때는 접지를 실시하는 등 누전에 대비하는 조치를 한다.
- 진동 등이 신체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전동방지장갑 등을 착용한다.
- 슛돌이 파손되거나 절삭칩이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재해사례



1



우천으로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가로등에 사용되는 스텐레스 재질의 지지대에 볼트 구멍을 뚫기 위해 핸드드릴기로 천공작업을 하던 중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누전으로 감전 사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2019-교육홍보-546



2



⇒ 핸드그라인더로 철재기둥의 용접부분 절삭작업을 하던 중 연식숫돌이 닿지 않자 외경이 큰 숫돌로 교체 후 작업하던 중 숫돌이 파괴되면서 파편이 비래하여 사망

3



⇒ 압력용기 제조 작업장에서 철재 압력용기의 부식 부분에 대한 연식작업을 위해 핸드 그라인더를 들고 이동하던 중 피복이 손상된 이동전선의 220V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

△ 재해발생 원인

발생원인 1

- 휴대형 전동드릴(이중 절연구조가 아님)에 접지 미설치
- 전원 측에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발생원인 2

- 숫돌의 파괴에도 이를 방호할 덮개 미설치
- 날아드는 파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보안면, 보안경 등 미착용

발생원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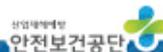
- 절연피복이 손상된 전선의 충전부에 직접 접촉
-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 전원개폐기 사용

△ 안전수칙

번호	점검 항목
1	작업 전, 사용기계의 외관, 케이블, 방호덮개 등을 점검하고 결함을 수정
2	전기기계·기구에 접지를 실시하거나 외함이 플라스틱 재질등 이중절연구조의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사용
3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는 전원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
4	피복이 손상된 배선은 즉시 기존 절연의 동등 이상으로 보강
5	이상소음이나 과열발생 시 전원차단 후 점검
6	연식숫돌 덮개의 임의 해제 금지
7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진동방지장갑, 귀마개 등 착용
8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05 폭염 속 현장정리 작업 중 열사병으로 쓰러짐(사망1)

공사명	○○○ 근생 신축공사	발생일시	2021. 07. 15.(목) 13:44경
재해형태	온열질환(열사병)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부산 기장군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9층 1개동
재해개요	2021. 07. 15.(목) 13:44분경 부산시 기장군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옥외 철근 가공장에서 지하층 기초철근 배근작업에 사용할 철근 가공작업 중 더위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재해임.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 옥외작업 수행 및 체감온도가 약30℃ 이상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간편히 설치 가능한 그늘막 등을 작업장소 가까이 설치하여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주의보(33℃) 발령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시 15분씩 휴식시간을 부여. - 야외에 철근야적 및 철근가공 등의 작업구간은 일기예보 상 폭염특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태양열에 의해 주변기온이 일기예보 상 기온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함.
------	---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 폭염특보는?

☀️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 발령(2020년 시범운영)

체감온도란?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 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하여 나타낸 온도입니다.

폭염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가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가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빛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돛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주세요.
▶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등
▶ 근무시간을 조정(예 : 9~18시 → 5~14시) 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피하십시오.
▶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 응급상황을 대비하세요.

발생 전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세요.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체감온도

☀️ 폭염영향예보(폭염특보)		🟢 관심		🟡 주의 (폭염주의보)		🔴 경고 (폭염경보)		🔴 위험								
기온(°C)	습도(%)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50	27.1	28.1	29.1	30.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55	27.5	28.5	29.5	30.5	31.5	32.5	33.5	34.5	35.5	36.5	37.5	38.5	39.5	40.5	41.5	
60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1	42.1	
65	28.4	29.4	30.4	31.4	32.4	33.4	34.4	35.4	36.5	37.5	38.5	39.5	40.5	41.6	42.6	
70	28.8	29.8	30.8	31.8	32.8	33.8	34.9	35.9	36.9	37.9	39	40	41	42.1	43.1	
75	29.2	30.2	31.2	32.2	33.2	34.3	35.3	36.3	37.4	38.4	39.4	40.4	41.5	42.5		
80	29.5	30.6	31.6	32.6	33.6	34.7	35.7	36.7	37.8	38.8	39.9	40.9	41.9	43		
85	29.9	30.9	32	33	34	35.1	36.1	37.2	38.2	39.2	40.3	41.3	42.4	43.4		
90	30.3	31.3	32.3	33.4	34.4	35.5	36.5	37.6	8.6	39.6	40.7	41.7	42.8			
95	30.6	31.7	32.7	33.8	34.8	35.9	36.9	37.9	39	40.1	41.1	42.2	43.2			
100	31	32	33.1	34.1	35.2	36.2	37.3	38.3	39.4	40.4	41.5	42.6				

☑️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을 숙지하십시오.

🟢 관심
체감온도 31°C 이상

- ✓ 질병예방(식중독, 장티푸스 등)을 위해 **사업장의 청결관리**에 유의
- ✓ 충분한 수분섭취를 위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준비
- ✓ 작업자가 실 수 있는 **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 주의
체감온도 33°C 이상
2일 이상 지속
폭염주의보

-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 작업자가 실 수 있는 그늘 제공
- ✓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경고
체감온도 35°C 이상
2일 이상 지속
폭염경보

-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 작업자가 실 수 있는 그늘 제공
- ✓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 위험
체감온도 38°C 이상

-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 작업자가 실 수 있는 그늘 제공
- ✓ 매시간 마다 15분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옥외작업 **자제**
-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 폭염시에는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하세요!!

-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
- 수면부족 등 집중력저하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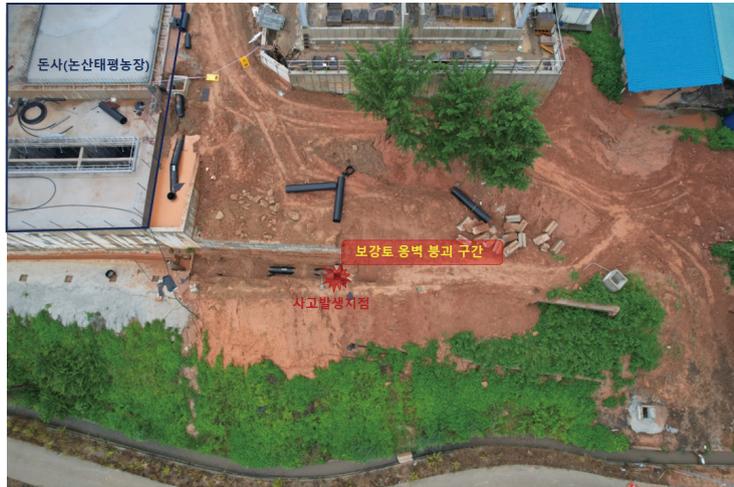

2020-기술총괄본부-323

06

우수관로 연결작업 중 굴착사면 및 보강토옹벽 무너짐(사망1)

공 사 명	○○농장 개축공사	발생일시	2021. 06. 01.(화) 13:40경
재해형태	무너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남 논산시	공사규모	돈사 1개동 및 부대토목
재해개요	2021년 6월 1일(화) 13:40 경,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재 ○○농장 개축공사 현장에서 설치된 보강토 옹벽 하부 우수관로 공사를 위한 터파기 후, 굴착저면에서 우수배관(PE,φ=600mm,L=4.0m) 연결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굴착사면 및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로 추정됨.		

재 해 상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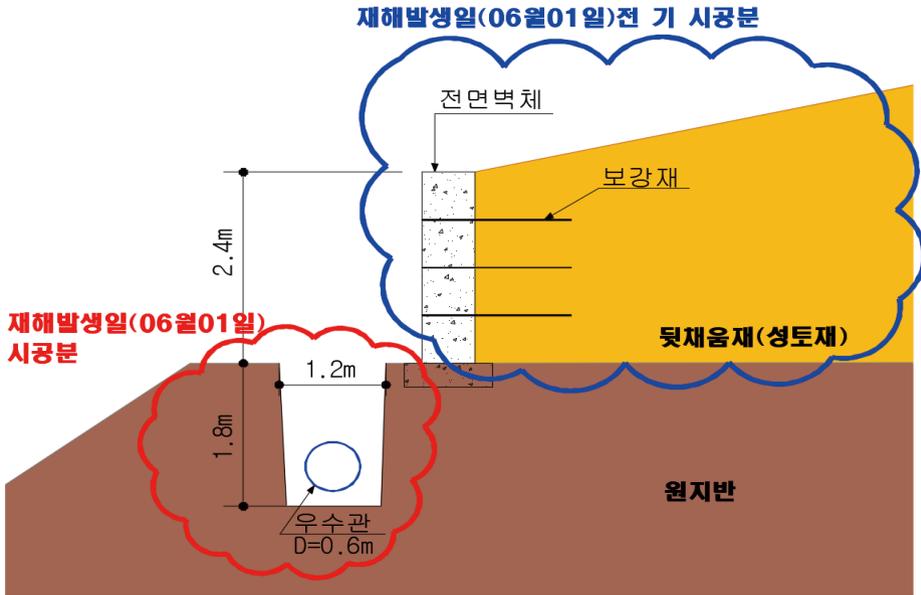
- 지반 굴착 작업 시 붕괴방지조치 철저
 - 굴착작업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따른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굴착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다만, 기울기를 유지하기 곤란하고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보공 등을 설치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8조제1항 관련)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1:1~1:1.5
	건지	1:0.5~1:1
암반	풍화암	1:0.8
	연암	1:0.5
	경암	1:0.3



▶ 관련사진



[사진1] 재해구간 시공현황



[사진2] 사고발생 직후 붕괴된 보강토 옹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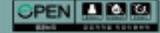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평가

굴착 작업안전

조선조선
코리아

2016-교육미디어-1038



작업개요



- 굴착 작업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 지하에 터파기를 하는 작업을 말하며, 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해 주변에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고 흙막이 내부의 토사를 굴착하는 작업도 포함
- 굴착 작업시 흙막이 붕괴, 흙막이 버팀보 위에서 추락, 굴삭기에 의한 충돌 및 끼임 등의 재해가 주로 발생

굴착 작업절차

01

굴착장비
반입

02

굴착

03

굴착토사
인양, 적재

04

굴착토사
반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8조(지반굴착시 위험방지) 지반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별표11)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울기 기준

보통흙(습지(1:1~1:1.5), 건재(1:0.5~1:1)), 암반(암화암(1:0.8), 연암(1:0.5), 경암(1:0.3))

- 제339조(토석 붕괴 위험방지) 굴착작업시 지반의 붕괴, 토석의 낙석위험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소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주요 위험요인

1. 굴착 작업 중 흙막이가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
2. 흙막이 H-Beam 위에서 용접, 볼트작업 중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작업하던 근로자 추락
3. 지하 굴착작업 중 굴착법면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해 추락
4. 지상 굴착면 단부에서 이동 중이던 근로자가 지하 굴착작업장으로 추락
5. 굴삭기로 굴착작업 중 굴삭기에 주변 근로자 충돌 및 끼임
6. 흙막이용 H-Beam 자재를 트럭에서 지게차로 하역 중 H-Beam 낙하
7. 슬러리 월(Slurry Wall) 작업을 위해 철근망을 크레인으로 인양 중 결속부 탈락으로 인한 철근망 낙하
8. 크램셸(Clam Shell)로 토사 인양 작업 중 크램셸 버킷과 와이어로프 연결부 탈락으로 인한 버킷 낙하
9. 자재 야적장에 적재된 흙막이 자재가 무게중심을 잃고 붕괴
10. 흙막이 버팀보 부재 위에 자재 등을 과적재하여 버팀대가 좌굴, 탈락되면서 흙막이 붕괴, 낙하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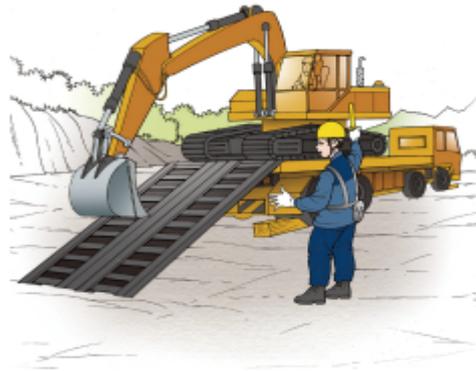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공단



굴착작업 안전대책 및 수칙

01. 위험요인 파악 굴착장비 반입

- 반입 장비의 연결부, 기계장치 등의 이상유무 사전점검
- 굴삭기 등 장비를 운반트럭에서 하역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
- 굴삭기 운전자의 자격유무 확인
- 굴삭기 장비의 후면부에 위험표지, 경광등 부착 확인
- 장비 하역시 운반트럭에 설치된 경사도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
- 장비 하역시 관리감독자 등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하역
- 작업자와 관리감독자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확인
- 바퀴 하부 구름방지용 뺨기 설치 확인



02. 위험요인 파악 굴착

- 법면, 토질, 또는 지층 상태의 위험성 파악
- 작업구역 내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 조치
- 토질에 적합한 굴착 구배(기울기) 유지 점검
- 과굴착 여부 점검
- 굴착법면의 붕괴 위험성 파악
- 굴삭기 후면부에 경광등, 접근위험 표지 설치 확인
- 굴삭기 운전자의 적절한 자격 유무 확인
- 굴삭기 버킷과 볼대의 연결부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점검
- 관리감독자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확인





굴착작업 안전대책 및 수칙

03. 위험요인 파악
굴착토사 인양, 적재

- 크래ichel 장비 반입 후 작업 전 사전점검
- 크래ichel 장비의 와이어 로프를 견고하게 결속
- 크래ichel 장비의 버킷과 와이어 로프 체결부위가 견고한 연결철물로 체결되어 있는지 점검
- 크래ichel 장비로 토사 인양시 굴착작업장 하부에 근로자를 통제할 신호수 배치
- 크래ichel 장비 운전자과 지하 굴착작업장의 신호수와의 신호체계 확립 점검
- 크래ichel 버킷 하강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크래ichel 장비 운전자의 자격유무 사전 확인
- 장비가 회전하는 지상 작업장소에 주변 근로자 통제 조치
- 크래ichel 장비의 회전하는 후면부에 근로자 충돌위험 표시 설치



04. 위험요인 파악
굴착토사 반출

- 굴삭기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장비를 유도하고 주변 근로자를 통제하고 있는지 점검
- 굴착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대 설치 확인
- 세물시설, 전기 판넬의 접지, 누전차단기 등의 설치 확인
- 굴삭기 후면부에 경광등 설치 확인
- 굴삭기 운전자의 자격유무 확인
- 굴삭기 연결부 등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 토사반출 장소에 법면 붕괴 위험성 파악
- 운반트럭에 토사 과적재 금지
- 감독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지휘
- 버킷과 크레인으로 토사 인양시 토사를 적정하게 적재





굴착작업 안전대책 및 수칙

위험성 평가표 (예시)

작업 절차	위험요인	등급 (상중하)	관리 대상	안전대책
01 굴착 장비반입	굴삭기 운전자의 운전미숙에 의한 전도 재해, 충돌재해 발생	하		굴삭기 운전자의 자격유무, 경험 정도 등을 사전에 확인 실시
	장비 하역시 안전 작업절차 미준수에 의해 하역 중 장비전도	중		장비 하역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중 안전 작업절차 준수
	하역 작업 근로자가 작업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무리한 작업 진행중 전도	상	V	하역 작업시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근로자가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통제
	장비 반입시 부속품 낙하, 전도, 연결부 탈락	하		반입 장비는 연결부, 기계장치의 이상유무를 사전점검하고 운행 및 조작실시
02 굴착	법면, 토질이나 지층 상태 점검 소홀에 따른 붕괴	상	V	작업 전, 작업 중 법면 상태, 토질 및 지층 상태를 수시로 확인
	흙막이 상부 지상에서 작업시 굴착면 단부로 추락	중		흙막이 상부, 굴착단부에는 안전난간대 설치
	굴착법면의 굴착구배 미준수에 의해 법면 붕괴	중		굴착법면은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굴착구배 준수하여 안정감 있게 법면 유지
	굴삭기 회전중 후면부에 충돌	하		굴삭기 후면부에 경광등, 접근금지 표시 설치, 유도자에 의한 주변 근로자 통제
03 굴착토사 인양, 적재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하여 충돌, 낙하	하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굴삭기 버킷 연결부 탈락에 의한 버킷 낙하	중		굴삭기 반입시 사전 안전점검 실시, 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크래셀 버킷과 운반트럭에 토사 적재에 의한 부식 등 낙하	중		크래셀 버킷 운반트럭에 토사 적재시 낙하위험이 없도록 적정하게 적재
	지하 토사인양작업 구역에 근로자 출입으로 하강하는 크래셀 버킷에 충돌	상	V	지하 토사 인양작업 구역에 근로자 출입 통제 조치
04 굴착토사 반출	토사 반출시 주변 법면 붕괴	상	V	토사 반출 작업장 주변 법면의 굴착구배 준수, 붕괴 위험 방지 조치 실시
	세물시설 조작중 감전	하		세물시설에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하여 감전 재해 예방
	근로자가 무리하게 운반트럭 상부에 올라가다 추락	중		토사반출, 토사 인양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불안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작업 지시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하여 충돌, 낙하	하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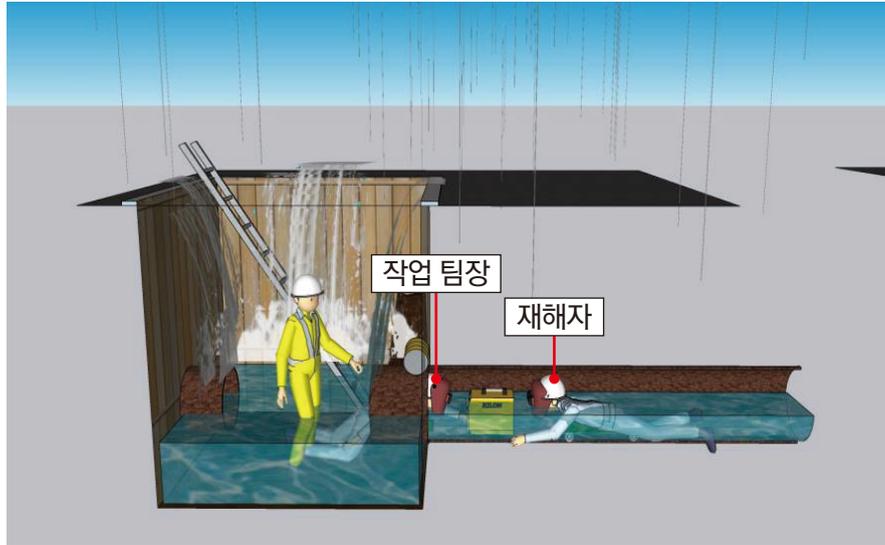


07

집수정 점검 중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망3)

공사명	○○○ 상수도 세관갱생공사	발생일시	2021. 06. 28.(월) 14:00경
재해형태	익사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전북 전주시	공사규모	상수도관(Ø500mm, L=674m)
재해개요	2021. 06. 28.(월) 14:00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 상수도 세관갱생공사 현장에서 재해자와 동료작업자 1명이 #7번 작업구를 통해 기존 노후 상수도관(Ø500mm) 내부로 들어가서 세관갱생작업* 중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관로 안으로 물이 차오르자 뒤늦게 나오던 재해자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재해임.		

재해 상황도



안전대책

- 집수정 내부작업에 대한 질식재해예방 대책 시행 철저
 - 밀폐공간 작업으로 산소결핍 등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 전 집수정 내부가 '적정공기'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환기조치 실시



▶ 관련사진



[사진1] 재해현장 전경모습



[사진2] 호우 시 #7번 작업구 입구 주변으로 빗물 유입



3 3 3 질식재해 예방수칙!!



1st 3 3자간(원청, 협력업체, 작업 근로자) 정보전달 및 안전보건규칙 준수

· 원청업체는 질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밀폐공간 및 작업공간 내 가스의 유입·누출 가능성 등에 대한 위험정보를 파악하고 그 위험정보를 협력업체 및 작업근로자와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① 원청 사업주 : 자사 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밀폐공간 및 가스의 유입·누출 등 유해요인 등에 대한 위험정보를 파악하고 협력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협력업체 : 원청이 제공한 위험정보를 확인하고 작업근로자에게 밀폐공간 및 작업공간 내 가스의 유입·누출 가능성 등 유해요인 등의 위험정보를 주지하고 사전에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
- ③ 작업근로자 : 원청 사업주 및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정보 숙지 및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2nd 3 3대 절차(밀폐공간 평가 → 출입금지 표시 → 출입허가제) 준수

· 자사 내 질식위험이 있는 작업 공간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밀폐공간 해당 여부를 평가하여 밀폐공간은 출입금지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시에는 출입허가제 시행 등 3대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① 밀폐공간 평가 : 유지·보수 등 근로자가 출입하여 작업하는 장소 또는 설비가 질식위험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된 밀폐공간뿐만 아니라 밀폐공간으로 조성될 위험이 있는 공간도 평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에 따른 밀폐공간 추가(‘17.3.3 시행)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선진국의 밀폐공간 평가 가이드(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당공간이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건축되었는가?	해당공간에서 산소결핍, 가스 누출 등 유해요인 발생 위험이 있는가?	밀폐공간 해당 여부
예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 ② 출입금지 표시 : 밀폐공간으로 평가된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사식)를 게시하고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 ③ 출입허가제 :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 및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보호구, 비상연락체계 등의 검토·조치 후 출입을 허가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3rd 3 밀폐공간 작업 3대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사업주, 관리감독자) 및 작업 근로자는 밀폐공간 작업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필수
3대 안전 수칙

- ①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② 작업전·작업중 환기 실시
- ③ 구조작업시 공기호흡기 또는 숲기마스크 필히 착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Part. V

장마철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01 장마철 공사장 안전점검 일반사항

사전계획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조치 결과
일기예보 사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호우 발생지역, 기간, 강우량 사전 확인 - 6~8월 장마기간 일기기록부 작성 및 관리 		
수방자재 확보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수기, 천막, 마대, 우비관련 등의 장구 등의 확보 - 양수기의 경우 여유분 확보 및 작동상태 수시점검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범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 발주처,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현장 비상대기반 편성·운영 - 집중호우시 비상대기반 24시간 운영 		
비상대책 수립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수립 여부 - 근로자 대피계획, 장비 및 자재 보호계획 등 		

현장 주변점검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조치 결과
배수시설 정비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수로 확보 및 막힘 여부 확인 필요시 집수정 및 침사지 추가 설치 현장주변 배수시설과 연계상태(오수·우수관로) 		
장비 및 자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 자재 이동 및 보관계획 -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조치 각종자재 정리정돈 및 결속상태 확인 		
주변여건 상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장 주변 지반상태 및 인접구조물 상태 확인 - 주변지반 침하, 균열, 발생여부 확인 - 인접 구조물 기울어짐, 벽체 균열 발생여부 확인 공사장 주변 지하매설물 상태 확인 - 가스관, 상수관 등의 고압관로 상태 확인 강풍대비 가설구조물 결속상태 확인 - 가설울타리, 외부비계 결속상태 수시점검 		



02 떨어짐(추락) 재해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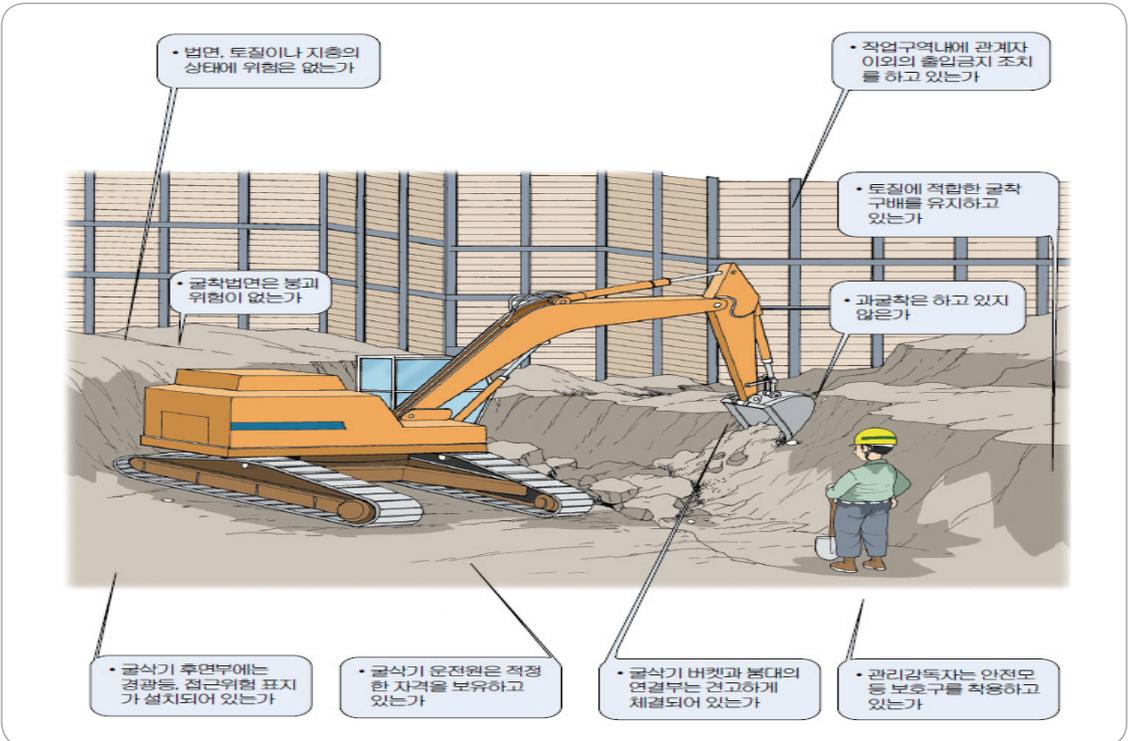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조치 결과
일 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통로 확보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통로 확보 및 사용상태 유지 여부 - 통로 주변 안전표지 등 통로 표시 상태 ● 비계 상 추락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발판 구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 추락방호망 설치 상태 ● 철골작업시 추락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로 설치 상태 -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상태 -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확인 ● 지붕작업시 추락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30cm이상 작업발판 설치 상태 -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상태 - 지붕단부 안전난간 설치 여부 ● 개구부 상의 추락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 방호조치 설치 상태 - 임시로 안전난간 등 해체시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상태 ● 추락예방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호구 적정 지급 여부 - 지급받은 개인보호구의 적정 착용 여부 		



03 무너짐(붕괴) 재해 예방

굴착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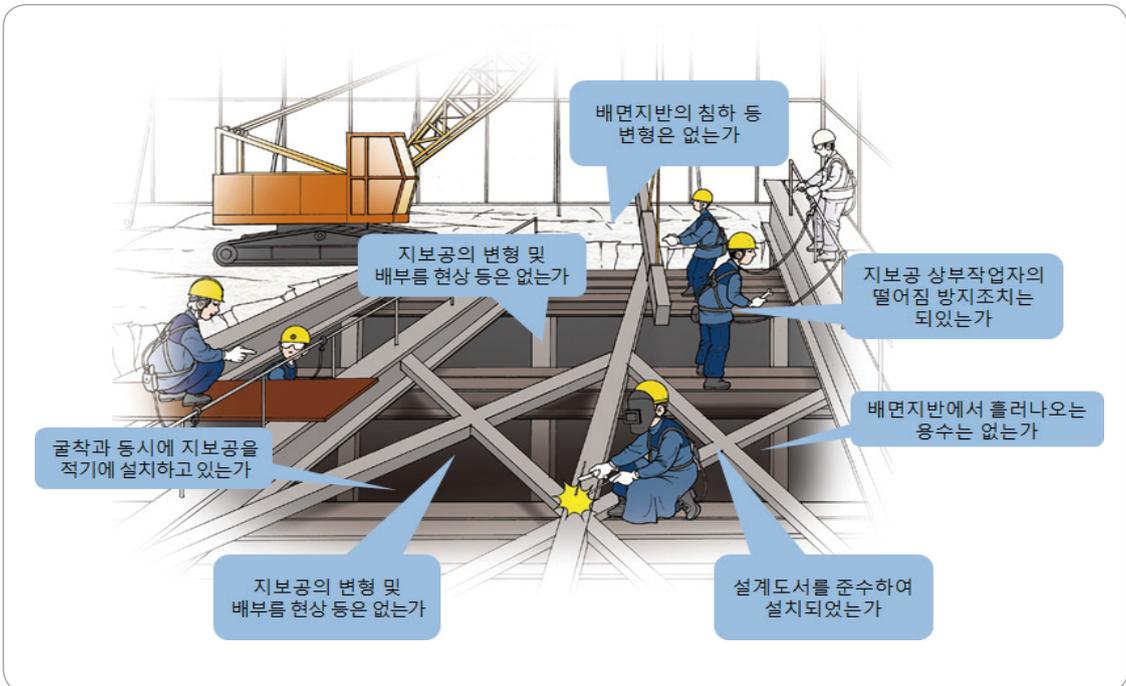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조치 결과
기 초 자 료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반조사보고서 결과 확인 - 지층상태, 층후, 지하수위 등의 파악 현장 주변여건 확인 		
사 면 상 태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면 상태 확인 - 암반 : 절리, 균열, 낙석유무 등 - 토사 : 표면 토사 유실 등 굴착면 및 바닥부 지하수 유입 상태 확인 		
안 전 시 설 설 치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면 보호조치 실시여부 - 비닐·천막 덮기, 마대 및 가마니 쌓기 등 안전휀스 등을 설치 여부 		





📖 흠막이 지보공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조치 결과
기 초 자 료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확인 - 시추조사,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의 확인 • 주변현황 확인 - 인접구조물, 지장물, 인접 공사장 등 		
외 관 상 태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및 점검 - 부재접합·교차부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유무 - 벽체 수직도·배부름 현상 및 용수유무, 토사유실 확인 - 브레이싱, 스티프너, 하중책, 볼트 등의 적정설치 여부 - 복공 및 배면지반 중장비 안치시 안전성 확보 여부 • 계측관리 실시여부 - 계측기 종류, 위치, 개소수 확인 - 계측관리 및 분석 실시 여부 		
안 전 시 설 설 치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의 설치 여부 - 위험시 경보시설 설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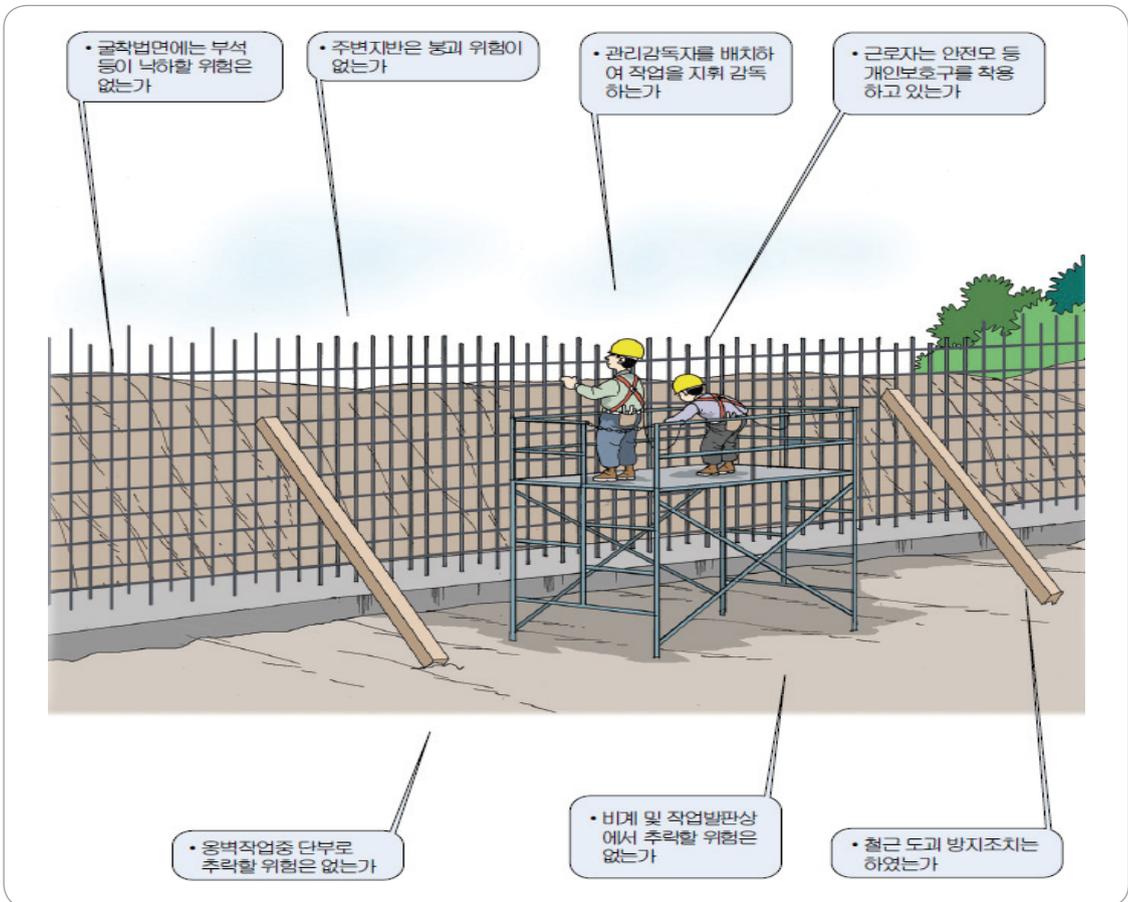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 옹벽 및 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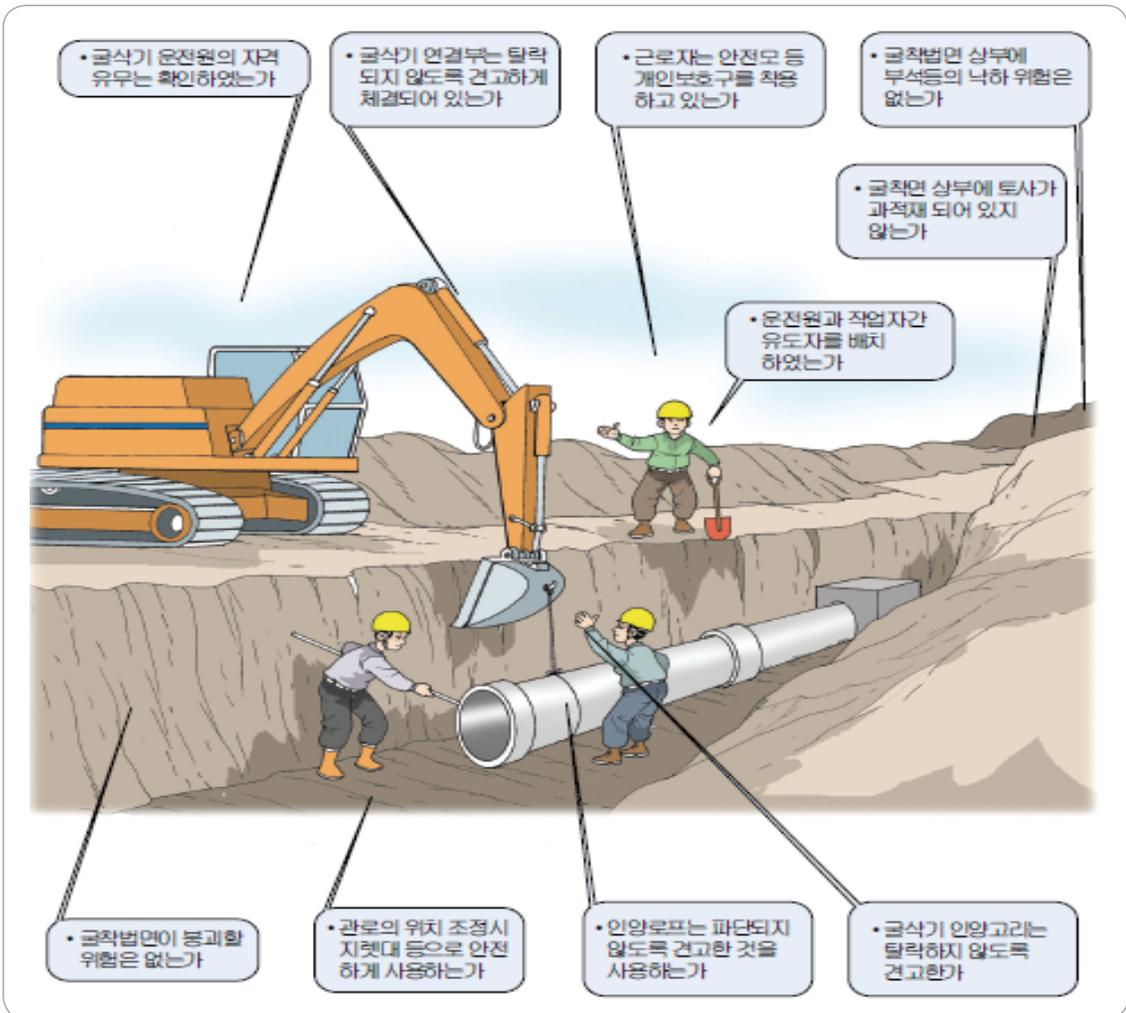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조치 결과
기 초 자 료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확인 - 시추조사,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의 확인 • 계측수행 및 보고서 작성 여부 		
외 관 상 태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부 상태 확인 - 파손, 균열, 배부름, 배수공 등의 외관 확인 • 배면지반 균열, 침하, 융기 등의 이상징후 확인 		
안 전 시 설 설 치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부 보호조치 실시여부 - 비닐·천막 덮기, 배수공 등의 추가설치 여부 • 배수로 설치상태 확인 및 청소 		





관로공사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결과
기 초 자 료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작성여부 - 굴착공법(오픈컷, 임시흙막이 등), 심도, 시험시공 등 		
시 공 상 태 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면, 지보재 설치 상태 등의 확인 - 굴착면 기울기 적정성, 지보재 설치 및 해체 확인 우기 후 작업시 지층상태, 지하수 유입 등 확인 		
안 전 시 설 설 치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조치 실시여부 - 우기시 굴착면 비닐·천막 덮기, 안전휰스 설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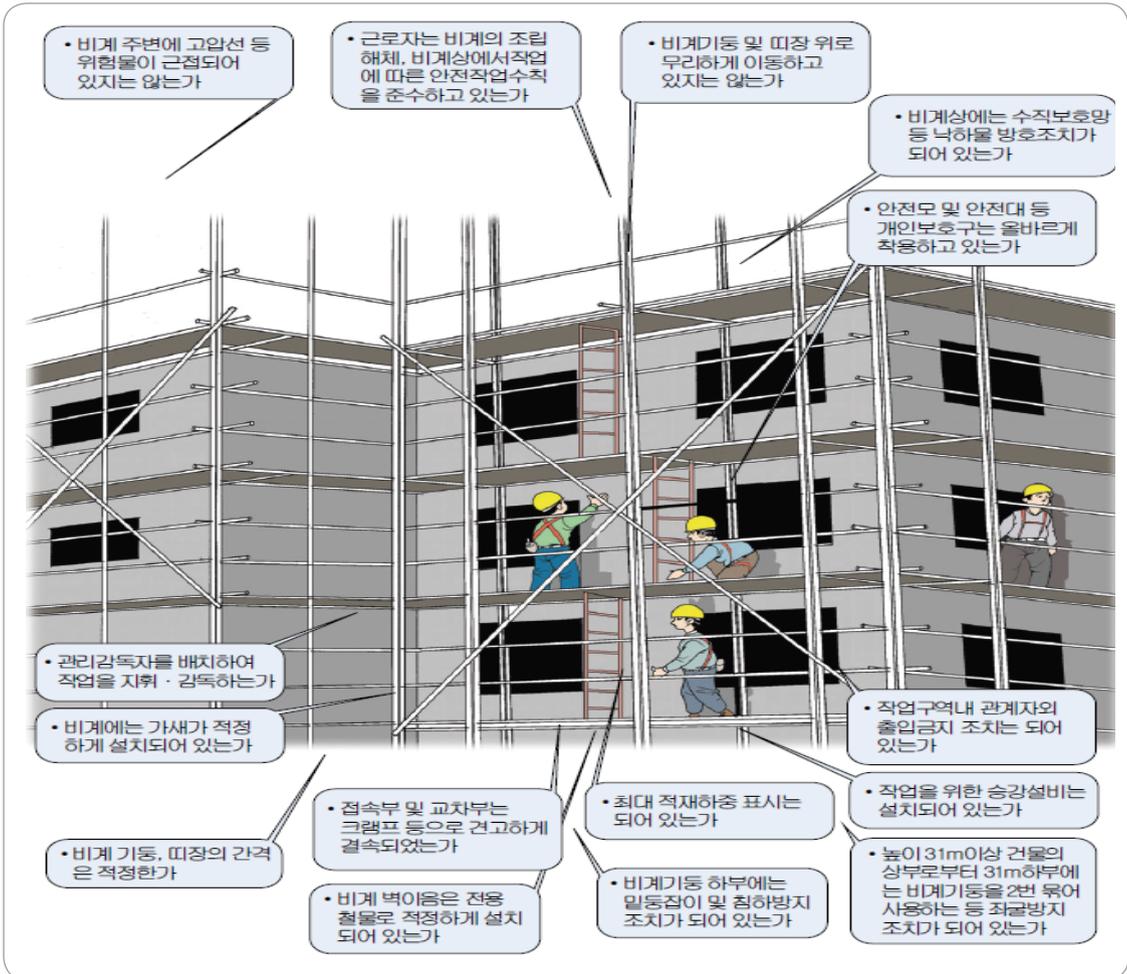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 비계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조치 결과
기 초 자 료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 인증제품 사용 여부 		
외 관 상 태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풍 대비 비계 설치상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간격, 연결철물 및 벽이음재 결속상태 - 작업발판 설치여부, 적재하중 적정성 등 • 기초부 침하, 들뜸, 고임부 변형 발생 여부 확인 		
안 전 시 설 설 치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난간, 작업발판 적정 설치여부 • 수직방망, 안전방망 등의 설치 및 결속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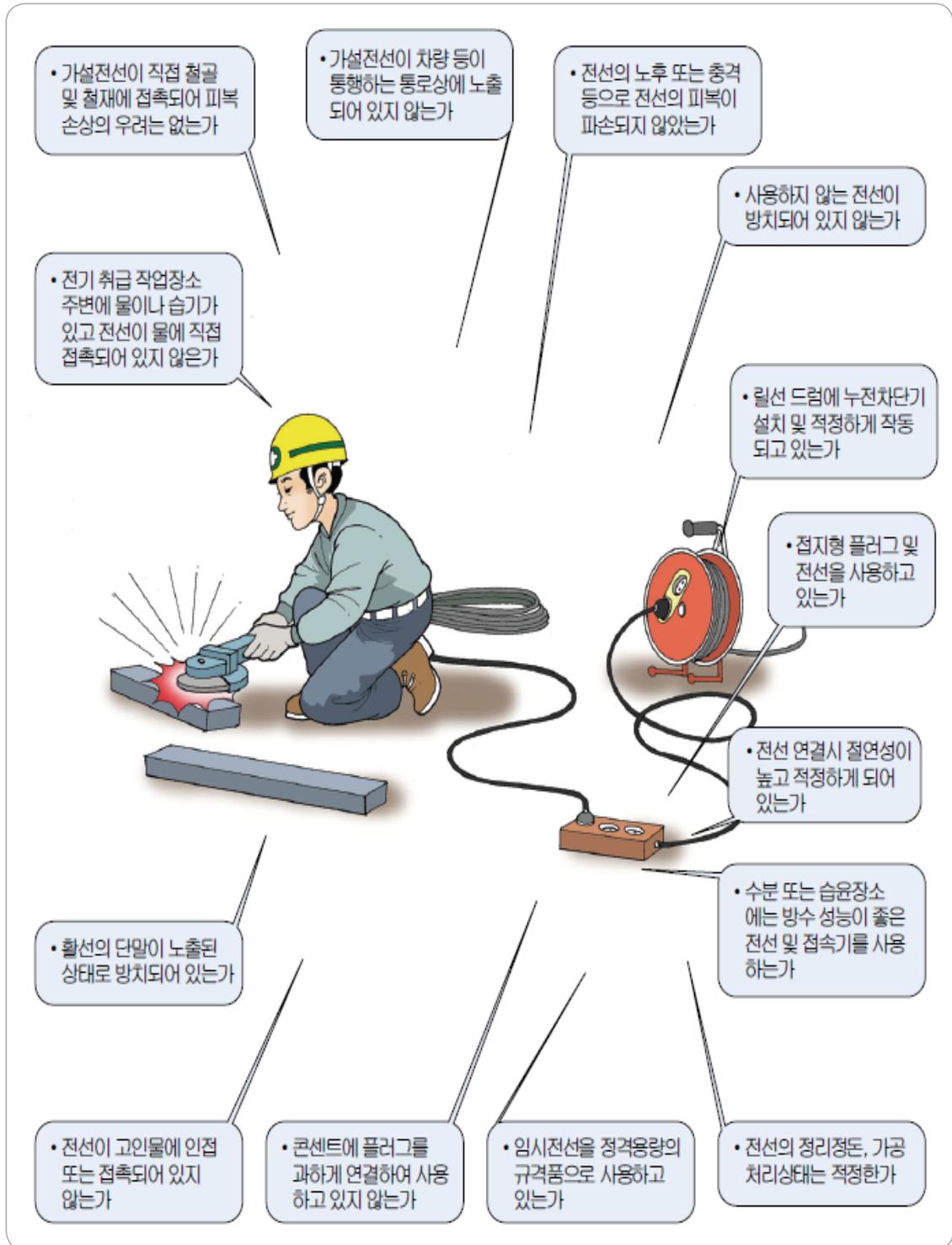




04 감전 재해 예방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조치 결과
안 전 조 치 상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배전반 안전조치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에 대한 안전성 여부 - 울타리 높이의 적정성 및 접지 여부 - 출입통제를 위한 위험표지판 설치 여부 • 임시분전반 안전조치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함접지 여부 - 분전반 시건장치 설치 및 잠김상태 유지 여부 - 분전반 내부 회로도 표시 여부 - 분기회로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여부 - 내부 충전부에 보호커버 설치 여부 - 전원 인출시 콘센트(접지형)이용 여부 		
이 동 전 선 설 치 상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선 및 이동전선 설치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및 통로에 노출 설치여부(지중 또는 가공설치) - 철골 및 철재에 부착 여부(전선 거치대를 사용하여 철골 등 철재에 직접 부착되지 않도록 조치) - 옥외 연결사용시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 사용여부 - 전선 절연피복 및 접지의 파손 여부 		
용 접 기 사 용 상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상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전격방지기의 부착 여부 - 용접기 외함의 접지 여부 - 배선 및 홀더 규격품 사용 및 절연피복의 파손 여부 - 단자 접속부의 절연조치 여부 		
양 수 기 사 용 상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양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전차단기를 통한 전원인출 여부 - 외함접지 여부 - 단자 연결부 절연조치 여부 - 양수기 인양로프의 적정성 여부(마닐라로프 사용)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기계기구 및 소형 전동공구 사용·설치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함접지 여부(또는 이중 절연구조의 공구 사용) - 전기드릴, 투광기 등 접지형 콘센트의 사용 여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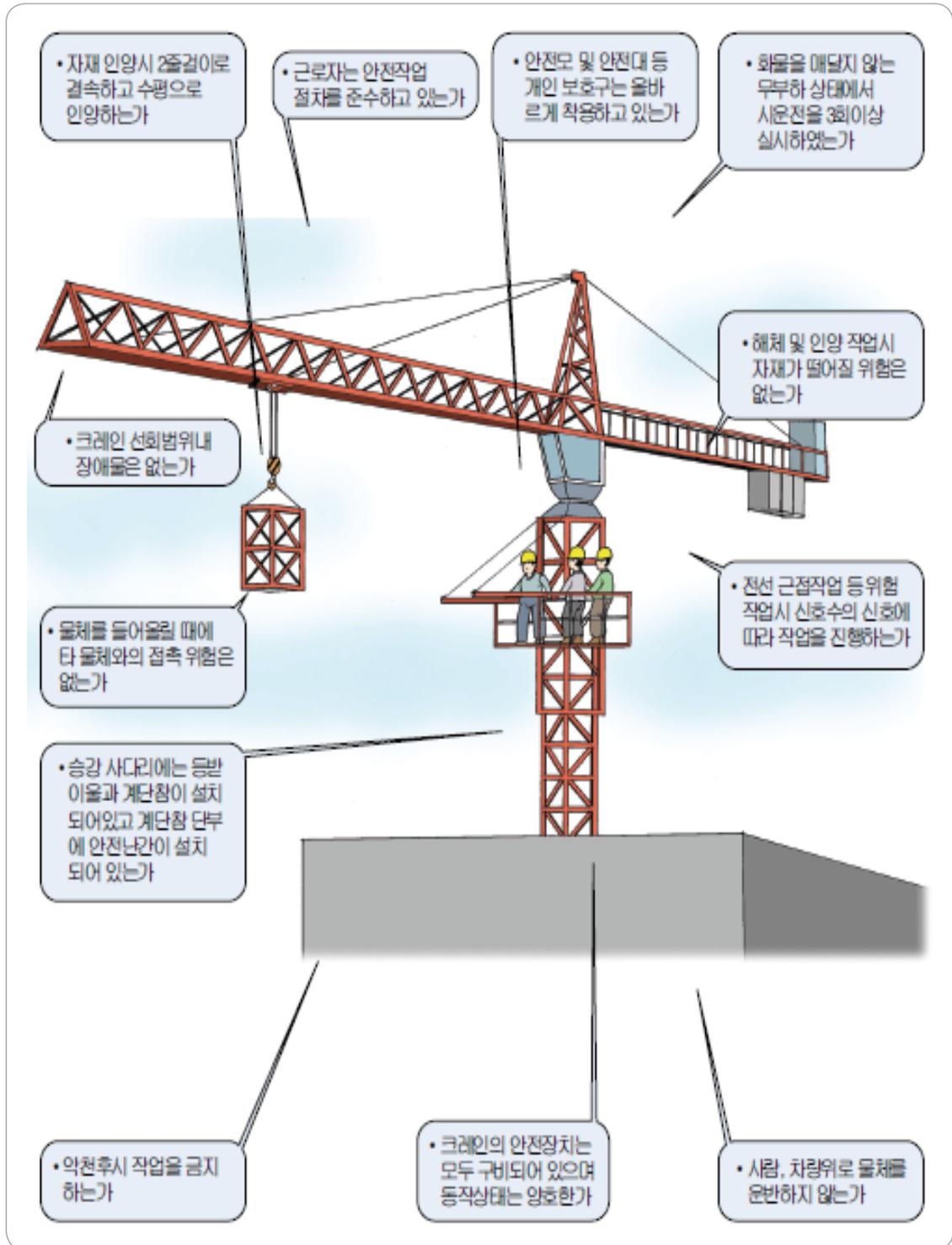


05 타워크레인 관련 재해 예방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조치 결과
기 초 자 료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심사 서류 또는 제조사 설치작업설명서 준수유무 - 지지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유무 •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에 지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심사 서류 또는 제조사 설치작업설명서 준수 - 와이어로프 지지를 위한 전용프레임 사용 여부 		
작 업 기 준 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 제한 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해체, 수리, 점검작업 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 - 순간풍속 30m/s 초과하는 바람 통과 후에는 작업 개시전 각 부위 이상유무 점검 • 설치·상승·해체 작업 시 영상촬영 및 보존 • 충돌방지조치(인접구조물 등과 충돌위험 있을시) • 설치·상승·해체 작업자 및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성 능 유 지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적정 여부 •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손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와이어로프 등은 사용금지 -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체인 사용금지 • 줄걸이 용구 손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 훅 해지장치 부착 여부 • 방호장치 정상 작동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06 질식 재해 예방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조치 결과
사 전 교 육 실 시 여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공간 작업시 특별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 작업, 페인트·본드 등 유기용제의 취급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환 기 시 설 설 치 여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탱크, 저수조 등 밀폐된 공간내 도장작업시 환기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장작업시 도료 등 재료 과다사용 작업 지양 • 분무식 도장작업시 마스크 착용 작업 여부 • 야간 도장작업시 충분한 조명설비 확보 여부 • 맨홀내부, 지하 Pit, 탱크, 바지선하부 선실등 밀폐된 공간내부의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된 공간내에서 작업전·작업중에는 산소농도 18% 이상 유지되도록 송풍, 환기 실시 및 농도 측정 • 맨홀내부, 터널내부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엔진양수기, 오거보링기, 페이로더 등 내연기관이 부착된 장비 사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내연기관이 부착된 장비 사용시 소요환기량을 산정하여 적정 환기시설 설치 • 아르곤가스 등 불활성가스가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나 시설의 내부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농도측정결과 산소농도 18% 이하일 경우 18%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기 및 농도 측정 • 밀폐된 공간에서 본드 등 접착제를 사용 작업(유기용제 취급작업) 시에는 국소배기장치등 환기설비 설치 여부 • 지하 정화조, 저수조 등 밀폐된 공간내에 거꾸집동바리 설치,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양생후 거꾸집동바리 해체 작업 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보 호 구 및 대 피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결핍 우려지역 작업시에는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산소 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 지급 착용 여부 • 사고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시 근로자의 피난, 구출 등을 위한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치 여부 		



07 저류 배수시설·펌프장·유수지 공사장 수몰(익사) 재해 예방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조치 결과
일기예보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기예보 등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수방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해 대비 비상 매뉴얼 작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에 따른 업무분장의 적정성 - 예상 강우량, 우수 유입량, 펌프량의 적정성 - 배수 계획도 작성의 적정성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범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원에 대한 연락망 구축의 적정성 - 건설공사발주자,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포함 여부 현장 비상대기반 편성·운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호우시 비상대기반 24시간 운영 비상시 근로자까지 상황 전파 체계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 경광등, 스피커, 유선전화, 무전기 등 현장 조건에 맞는 상황전파 수단 설치 및 작동 적정성 		
비상대책 수립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 대피계획 수립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대기반 업무분장의 적정성 -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의 적정성 비상대비 훈련 실시 여부 		
비상용 기구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용 기구 및 개인보호구 비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기, 마대, 우비, 장화, 랜턴 등 수방자재 비치 - 구명조끼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배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수로 확보 여부 집수정 및 침사지 설치 현장 주변 배수시설과의 연계 상태 		
비상시 출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유입 차단시설(수문 등) 설치 및 작동 여부 비상시 출입통제조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 출입인원 통제 체계 수립의 적정성 - 출입인원 통제 시설 설치 및 작동의 적정성 		



08 건설현장 화재·폭발 재해 예방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조치 결과
사 전 교 육 실 시 여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기작업시 특별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여부 		
작 업 기 준 준 수 여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화성 액체 취급장소 및 화재위험장소의 안전조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연성, 인화성 물질 다량 취급장소의 화재예방을 위한 작업 배치 • 가스용접작업시 안전조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호스와 취관의 이상유무 점검 및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 사용자 명찰 부착 등 오조작 방지조치 • 가스용기 관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용기의 방치 여부 및 부식·마모·변형여부 점검 •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사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공구 사용 금지 • 유류가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작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가 있는 배관·탱크·드럼 용기에 대해 미리 제거하고 작업 • 화재위험작업의 준수사항 이행 및 서면게시, 화재감시자의 배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 • 인화성 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 또는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화재·폭발 방지 조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농도 측정자를 지명하고 측정하되 위험판단시 근로자 대피 및 화기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 		



Part. VI

기타
안내사항





01 건설현장 클린사업 조성지원

안전은 권리입니다

2022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안내

-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대상
- ☑ 연간 3회까지 지원 (3억 미만: 9개소, 20억 미만: 6개소)

신청방법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우편·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clean.kosha.or.kr)

01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조건)
- ※ 지원제외대상: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02 지원조건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조건표 기준)
 -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설치비용(공단판단금액)의 3억 미만 65%, 3~20억 미만 60%, 20~50억 미만 50%까지 지원
-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시스템비계 보조금은 임대비만 지원(조건표 금액의 47%), 안전방망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공사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 * 안전방망 재료비 세부금액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clean.kosha.or.kr)
 - ※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원도급사 보조시와 동일 지원

03 보조대상설비

- 시스템비계: 수직·수평·가새재, 안전간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 안전방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추락방호망 및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 사다리형 작업발판: 최대높이 3.5m 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S마크 인증품, 현장 당 2개 이내)
 -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수직보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

04 지원절차

신청
사업주

투자계획
확인
공단

보조금 결정
공단

시설
임대·설치
사업주

원료확인 및
지급요청 안내
공단

보조금
지급요청
사업주

보조금 지급
공단

05 보조지원 대상설비 예시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플라잉넷

추락방호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건설업 클린사업 지역별 일선기관 연락처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번호(☎1544-3088) 및 지역별 일선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일선기관명	연락처	관할지역
1	서울광역본부	02-6711-2898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2	서울동부지사	02-2086-8033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3	서울남부지사	02-6924-8738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4	강원지역본부	033-815-1042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5	강원동부지사	033-820-2512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6	부산광역본부	051-520-0516	부산광역시
7	울산지역본부	052-226-0548	울산광역시
8	경남지역본부	055-269-0533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9	경남동부지사	055-371-7534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10	광주광역본부	062-949-879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11	전북지역본부	063-240-8563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12	전북서부지사	063-460-3635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13	전남지역본부	061-288-8753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14	전남동부지사	061-689-4945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15	제주지역본부	064-797-7512	제주특별자치도
16	인천광역본부	032-510-0585	인천광역시
17	경기지역본부	031-259-7141	경기도(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18	경기북부지사	031-828-1952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19	경기서부지사	031-481-7572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20	경기동부지사	031-785-3336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21	경기중부지사	032-680-6541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22	고양파주지사	031-540-3827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23	대구광역본부	053-609-0534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24	대구서부지사	053-650-6855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25	경북지역본부	054-478-8014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26	경북동부지사	054-271-2034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27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2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28	충북지역본부	043-230-7116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과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29	충북북부지사	043-849-1022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30	충남지역본부	041-570-3454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02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안내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안내

지붕공사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광창(선라이트) 파손에 의한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제출(clean.kosha.or.kr) 또는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방문

1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지붕 상부에서 작업이 수행된 공사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 건설업의 경우 본사 산재관리번호로 신청

※ 지원제외대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700위 이내의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철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간신휘장(400**)인 경우 등

《 채광창 안전덮개 반드시 설치하세요 》

(*21.11.19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간판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2 지원설비



- 지원조건
- 지원금액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세부기준
- 알루미늄 합금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 성능 및 제작기준에 부합한 제품(뒷면참조)

3 지원절차



4 문의처

전국 대표번호 1544-3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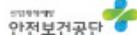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clean.kosha.or.kr
지역별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채광창 안전덮개 성능 및 제작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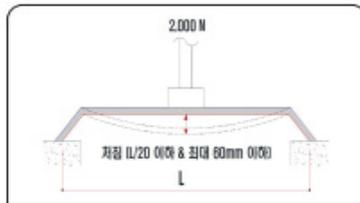
성능기준

- 휨 성능** 보강재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덮개를 단순 거치한 상태에서 중앙부에 직경 150mm이상의 원형지그 또는 150×100mm이상의 사각형지그로 수직하중 2,000N* 재하 시 견딜 것(시험 속도는 분당 30mm 이하)
 * 적압자 물무게 + 운반자재 중량 + 충격
- 미끄러짐 성능** 90° 경사진 샌드위치 패널 또는 칼라강판(이하 "지붕재"라 한다)에 설치하였을 때 미끄러지거나 이동하지 않을 것
 * 미끄러짐 성능은 -30℃~80℃의 온도범위에서 유지될 것
- 처짐** 수직하중 2,000N에서 L/20mm* 이하이고, 최대 60mm 이하일 것
 * L: 휨 성능시험 시 안전덮개가 지지되는 내측길이(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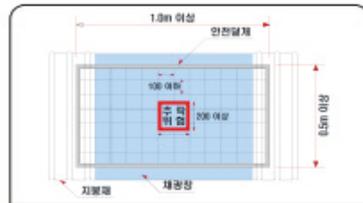


제작기준

- 재료** 알루미늄 합금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무게는 5kg 미만일 것
- 구조** 폭 0.5m 이상, 길이* 1.0m 이상의 사각형으로 높이는 0.1m 미만이고, 격자형 덮개의 경우 한 변의 순길이 (Net length)는 100mm 이하일 것
 * 길이: 안전덮개를 지붕재 위에 설치 시 채광창을 가로지르는 방향
 지붕재 위에 설치 시 볼트 등의 천공이 아닌 탈착이 가능한 구조일 것
 안전덮개는 지붕재와 맞닿는 위치에서 밀착되는 구조일 것
- 표식** 안전덮개가 개구부임을 알 수 있도록 중앙부에 200×200mm 이상의 크기로 추락위험에 대한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의 표식을 설치할 것



단면도 (성능기준: 처짐)



평면도 (제작기준)



03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

안전은 권리입니다

밀폐공간, 한번의 호흡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 ☎ 1644-8595 로 연락주세요

밀폐공간 : 반드시 사방이 꼭 막힌 공간이 아니라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그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가스나 산소결핍 등에 의해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



One-Call 서비스란?

전화 한 통(1644-8595)이면 밀폐공간 작업 전 전문가가 찾아가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①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안전교육, ③ 장비대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무상서비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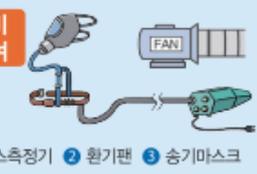
가스농도 측정



안전교육



장비대여



① 가스측정기 ② 환기팬 ③ 송기마스크

신청방법 및 절차



전화 신청
1644-8595

사업장



전화 접수



현장서비스
- 가스농도 측정
- 안전교육
- 장비대여



장비회수

안전보건공단(One-Call 서비스 수행기관)

※ 밀폐공간작업 3일전까지 전화로 신청 바랍니다.



밀폐공간 주요 질식재해사례

오수처리장



오수처리장 침수조 내 펌프교체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2명 사망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시설 침전조내 센서교체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1명 사망

맨홀



하수관거 공사현장 관로확인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2명 사망

지하 집수정



건물 지하 집수정 내 수중모터 수리작업 중 산소결핍으로 3명 사망

화학설비



반응기 내부 청소작업 중 질소가스 누출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1명 사망

콘크리트 보온양생



콘크리트 양생 갑판보충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 사망

※ 기타 질식재해 발생장소 : 정화조, 상하수도관, 저장용기, 용접배관, 집진설비 등 내부

질식위험공간 안전작업절차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 체크!!



- 1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적정공기 산소 18~23.5%,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 2 **작업 전, 작업 중 환기팬으로 환기**
- 3 **구조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 4 **무단 출입금지(경고표지 부착)**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0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카드 재발급방식 일시변경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활용하세요!

기초교육 이수증을 훼손·분실했을 때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휴대폰 앱(App), 인터넷, 문자 메시(LMS)와 같은 온라인으로 본인의 이수증을 직접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 근로자

이수증 분실, 훼손 시에도 재발급이 필요 없어요.

이수증 온라인 조회 방법

1 모바일 휴대폰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앱)

- [Play스토어 및 App스토어]에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App) 다운로드 및 설치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이수자 조회 선택
 - 본인인증 로그인최초 접속자는 비밀번호 설정
 - QR코드 저장 또는 이수증 확인
 - 현장 출입 시 QR코드 또는 이수증 화면 제시



2 인터넷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안전보건교육포털」 입력 또는 www.koshats.or.kr 접속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클릭
 - 이수정보 조회
 - 본인인증 로그인최초 접속자는 비밀번호 설정
 - 종이이수증 출력 또는 저장
 - 현장 출입 시 QR코드 또는 종이이수증 제시



3 휴대폰 문자메시지(LMS)를 통한 URL 접속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전화·팩스 또는 전용에어로 문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및 지문) 제거 제출
 - 등록된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로 URL 발송(공단)
 - URL 주소 클릭 → QR코드 및 이수증 확인
 - 현장 출입 시 QR코드 또는 이수증 화면 제시



✓ 건설현장 관리자

온라인(QR코드)으로 근로자의 기초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세요.

- 현장 관리자가 본인 휴대폰으로 근로자의 온라인 이수증(휴대폰 또는 종이이수증의 QR코드)을 스캔하여 이수내역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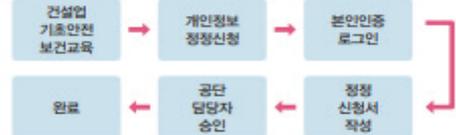


- 장점**
- 관리자 본인 휴대폰으로 이수내역을 간편하게 조회 가능
 - 공단 서버 직접 접속으로 이수증의 위변조 불가

✓ 개인정보 정정 신청 방법

개인정보가 변경(이름, 휴대폰번호 등)된 경우, 개인정보 정정신청 후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 휴대폰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또는 인터넷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정정신청 서류를 오프라인(팩스/이메일)으로 제출해 정정이 가능합니다.(공단 담당자에게 문의)



□ 이수증(재발급) 및 개인정보 정정 관련 문의처

서울·경기지역	강원지역	강원지역	제주·제주지역
서울지역본부 02-4712-2147 / 02-4712-2830 k-edu@koshats.or.kr	부산지역본부 052-620-0100 / 052-620-0500 k-edu@koshats.or.kr	강원지역본부 033-410-0508 / 033-243-8215 k-edu.12@koshats.or.kr	제주지역본부 063-999-0215 / 063-999-0217 k-edu@koshats.or.kr
서울지역지사 02-4959-0117 / 02-4959-0126 k-edu@ksh.or.kr	울산지역본부 052-236-0184 / 053-240-0897 k-edu@koshats.or.kr	강원지역지사 033-420-2942 / 033-420-2950	연세지역본부 063-340-0122 / 063-340-0129 k-edu.27@koshats.or.kr
서울지역지사 02-2096-0238 / 02-2096-0229	강원지역본부 033-249-0332 / 033-249-0590 k-edu@koshats.or.kr	충청지역본부	연세지역지사 063-960-3623 / 063-960-3605
인천지역본부 02-4320-0404 / 02-4320-0402 k-edu@koshats.or.kr	대전지역본부 042-013-7626 / 042-013-8040	충청지역본부	연세지역지사 063-289-0104 / 063-289-0118
경기지역본부 02-520-2020 / 02-520-2191 k-edu@koshats.or.kr	대전지역본부 032-409-0170 / 032-421-8620 k-edu@koshats.or.kr	충청지역본부	연세지역지사 063-489-4626 / 063-420-0900 k-edu.23@koshats.or.kr
경남지역본부 052-540-3383 / 052-999-4385	충청지역본부 032-400-0127 / 032-400-0420	충청지역본부	연세지역본부 064-797-7106 / 064-797-7112 k-edu@koshats.or.kr
경기지역지사 032-690-0136 / 032-691-0131	충청지역본부 084-479-9027 / 084-492-0228 k-edu@koshats.or.kr	충청지역본부	
경기도지역본부 02-339-1199 / 02-339-1130 k-edu@ksh.or.kr	충청지역본부 084-271-2324 / 084-271-2325	충청지역본부	
경기도지역지사 02-484-7107 / 02-484-4912 k-edu@ksh.or.kr		충청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052-780-1812 / 052-780-2182 k-edu@koshats.or.kr		충청지역본부	



05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 설치! 작업 전 안전점검(TBM)! 생명을 지킵니다.

1위 단부·개구부 떨어짐

단부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

2위 철골 떨어짐

철골 인양 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3위 지붕 떨어짐

안전모·안전대 착용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4위 비계·작업발판 떨어짐

안전난간 설치,
외벽 틈 추락방호망 설치

5위 굴착기 부딪힘

작업반경 출입통제
후방영상장치 작동 확인

6위 고소작업대 떨어짐

안전대 체결
작업대 이탈 금지

7위 사다리 떨어짐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8위 달비계 떨어짐

구멍줄 안전대 체결
2개 고정점 설치(구멍줄, 작업줄)

9위 트럭 부딪힘

이동구간 출입통제
전담유도자 배치

10위 이동식 비계 떨어짐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11위 거푸집·동바리 떨어짐

시스템동바리 사용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12위 이동식크레인 맞음

인양물 고정 철저
하부 출입통제

이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허락 없이 타기관에서 부분 또는 전부를 복사, 복제, 전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본 도서의 내용은 안전관리 업무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 작성 되었으며, 업무상 이의 제기 등 소명자료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에 관하여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재해예방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639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2022-건설안전실-310

- 발 행 일 : 2022년 6월 인쇄
- 발 행 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 종 주
- 발 행 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성안동)
- 전 화 : (052) 703-0639

비매품